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 11. 29.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회부경위	1
II. 제안사유	1
III. 예산안 편성규모	2
1. 예산안 개요	2
2. 세입예산안	3
3. 세출예산안	4
IV. 검토의견	5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5
2. 주요 검토의견	5
가. 예산안 총괄 규모	5
나. 세입예산안	8
1) 이전수입	8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8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5
다) 기타이전수입	20
2) 자체수입	21
3) 기타	22
4) 내부거래	23
다. 세입예산안 주요 사항 검토	24
1) 기금전입금 세입 조치에 대한 검토	24
2) 이자수입에 대한 검토	26
3) 이례적인 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 규모	29
4) 불안정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검토	31
5) 서울시 비법정전입금(교육경비보조금) 규모 축소에 대한 검토	35

라. 세출예산안	37
마.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 검토	44
1) 인건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4
2)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부실 및 오류	46
바.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49
사.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55
아. 실·국별 주요사업별 검토	59
1) 안전총괄담당관	59
가) 안전인프라구축	59
2) 기획조정실	65
가) 입학준비금지원	65
나)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67
다) 교원노사관리	70
라) 교특예산편성	72
3) 교육정책국	76
가) 원격교육지원	76
나) 정보화기획	81
다)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초등교장자격연수, 중등교원연수지원	84
라)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89
마) 유아교육교육력제고	93
바) 생태체험교육	96
사)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99
아)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	102
자) 인사관리	106
차)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110
카)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13
4) 평생진로교육국	116
가) 역사교육활성화지원	116
나)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119
다)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122
라) 학교폭력예방대책	124

마) 민주시민교육강화	127
바) 특성화고지원	133
사) 진로교육활성화	136
아) 취업지원센터운영	138
자) 무상급식	140
차) 보건교육연구활동지원	143
카)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45
5) 교육행정국	147
가) 학교신설(공립유)	147
나) 학교신설(공립특수)	150
다) 재산관리일반운영비	154
라) 노후시설개선	158
마) 교육환경개선사업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	161
6) 직속기관	164
가)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	164

**[별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69
----------	------

2023년 11월 2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11.22.) 상정 및 질의·토론

제3차 교육위원회(2023.11.23.) 질의·토론

제4차 교육위원회(2023.11.24.) 질의·토론

제5차 교육위원회(2023.11.27.) 질의·토론

제6차 교육위원회(2023.11.29.) 수정가결

II. 제안사유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Ⅲ.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A)	2023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11,160,536	12,891,521	△1,730,985	△13.4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550,078	7,184,206	△634,128	△8.8
	자치단체이전수입	4,072,173	4,172,089	△99,916	△2.4
	기타이전수입	11,487	8,067	3,420	42.4
	자체수입	134,517	126,384	8,133	6.4
	전년도이월금	61,451	1,385,345	△1,323,894	△95.6
	금융자산회수	830	15,430	△14,600	△94.6
	내부거래(기금전입금)	330,000	0	330,000	순증
세 출	인건비	7,095,608	6,929,454	166,154	2.4
	기관운영비	39,287	39,303	△16	0.0
	학교운영비	996,991	942,021	54,970	5.8
	교육사업비	2,225,658	2,143,966	81,692	3.8
	시설사업비	782,940	1,013,477	△230,537	△22.7
	재무활동	52	1,234,491	△1,234,439	△100
	예비비및기타	20,000	588,809	△568,809	△96.6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중앙 부 전 입 수	보 통 교 부 금	5,903,438	52.9	6,390,221	49.6	△486,783	△7.6	
	특 별 교 부 금	0	0.0	119,507	0.9	△119,507	△100	
	증 액 교 부 금	176,123	1.6	162,753	1.3	13,370	8.2	
	국 고 보 조 금	19,796	0.2	21,225	0.2	△1,429	△6.7	
	특 별 회 계 전 입 금	450,721	4.0	490,500	3.8	△39,779	△8.1	
	계	6,550,078	58.7	7,184,206	55.7	△634,128	△8.8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일반 정	지 방 교 육 세	1,811,356	16.2	1,926,002	14.9	△114,646	△6.0
		담 배 소 비 세	257,277	2.3	261,992	2.0	△4,715	△1.8
		시 도 세	1,817,974	16.3	1,806,223	14.0	11,751	0.7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988	0.0	1,988	0.0	0	0.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116,861	1.0	116,297	0.9	564	0.5
		교육급여보조금	10,491	0.1	10,424	0.1	67	0.6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6,512	0.1	15,258	0.1	1,254	8.2
		소 계	4,032,459	36.0	4,138,184	32.1	△105,725	△2.6
	비 법 정	광 역 자 치 단 체	15,914	0.1	21,125	0.2	△5,211	△24.7
		기 초 자 치 단 체	23,800	0.2	12,780	0.1	11,020	86.2
		소 계	39,714	0.3	33,905	0.3	5,809	17.1
	계	4,072,173	36.3	4,172,089	32.4	△99,916	△2.4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1,487	0.1	8,067	0.1	3,420	42.4
자 체 수 입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521	0.0	1,319	0.0	202	15.3	
	행 정 활 동 수 입	5,597	0.0	5,341	0.0	256	4.8	
	자 산 수 입	8,875	0.1	33,573	0.3	△24,698	△73.6	
	이 자 수 입	11,819	0.1	11,819	0.1	0	0.0	
	기 타 수 입	106,705	0.9	74,332	0.6	32,373	43.6	
	계	134,517	1.1	126,384	1.0	8,133	6.4	
기 타	전 년 도 이 월 금	61,451	0.8	1,385,345	10.7	△1,323,894	△95.6	
	금 용 자 산 회 수	830	0.0	15,430	0.1	△14,600	△94.6	
	계	62,281	0.8	1,400,775	10.9	△1,338,494	△95.6	
내부거래(기금전입금)		330,000	3.0	0	0.0	330,000	순증	
합계		11,160,536	100.0	12,891,521	100.0	△1,730,985	△13.4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건비	공 무 원	4,609,045	41.3	4,496,371	34.9	112,674	2.5	
	계 약 제 교 원 및 교육 공 무 직 원	1,165,491	10.4	1,121,581	8.7	43,910	3.9	
	사 립 학 교	1,321,072	11.9	1,311,502	10.2	9,570	0.7	
	계	7,095,608	63.6	6,929,454	53.8	166,154	2.4	
경상비	교 육 행 정 기 관 운 영 비	39,287	0.4	39,303	0.3	△16	0.0	
	학 교 운 영 비	공 립	745,649	6.7	668,593	5.2	77,056	11.5
		사 립	251,342	2.2	273,428	2.1	△22,086	△8.1
		소 계	996,991	8.9	942,021	7.3	54,970	5.8
	계	1,036,278	9.3	981,324	7.6	54,954	5.6	
사업비	교 육 사 업 비	2,225,658	19.9	2,143,966	16.6	81,692	3.8	
	시 설 사 업 비	학 교 신 증 설	49,612	0.4	62,122	0.5	△12,510	△20.1
		일 반 시 설	647,732	5.8	882,640	6.8	△234,908	△26.6
		급 식 시 설	85,596	0.8	68,715	0.5	16,881	24.6
		소 계	782,940	7.0	1,013,477	7.9	△230,537	△22.7
계	3,008,598	26.9	3,157,443	24.5	△148,845	△4.7		
재무 활동	지 방 채 상 환 등	52	0.0	52	0.0	0	0.0	
	기 금 전 출 금	0	0.0	1,234,439	9.6	△1,234,439	△100	
	계	52	0.0	1,234,491	9.6	△1,234,439	△100	
예 비 비 및 기 타	20,000	0.2	588,809	4.6	△568,809	△96.6		
합	계	11,160,536	100.0	12,891,521	100.0	△1,730,985	△13.4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 이라 함)은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69호로 제출되어 2023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예산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미래교육기반 구축 및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¹⁾.

2. 주요 검토의견

가. 예산안 총괄 규모

- 금번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조 1,605억 3천 6백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2조 8,915억 2천 1백만원보다 13.4%(1조 7,309억 8천 5백만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액	10,084,661	9,741,994	10,588,635	12,891,521	11,160,536
전년대비 증감액	704,346	△342,667	846,641	2,302,886	△1,730,985
증 감 율	7.5	△3.4	8.7	21.7	△13.4

- 이와 같은 전년도 대비 예산안의 대규모 감액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원을 기금전입금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4,867억 8천 3백만원(△7.6%) 감액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의 내시액 지

1)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지원 및 미래교육을 위한 24년 예산편성', 서울시교육청, 2023.11.1. 보도자료 참조.

연통보로 전액 편성되지 못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1조 3,238억 9천 4백만원(△95.6%)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397억 7천 9백만원(△8.1%) 감액되었고, ‘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부담금’은 지방교육세 세수 감소에 따라 1,146억 4천 6백만원(△6.0%) 감액 편성되는 등 대부분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500억 7천 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721억 7천 3백만원, 기타이전수입 114억 8천 7백만원, 자체수입 1,345억 1천 7백만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622억 8천 1백만원, 기금전입금 3,300억원 등 총 11조 1,605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2] 세입 자원별 증감 내역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금액	비율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 통 교 부 금	5,903,438	6,390,221	△486,783	△7.6	
	특 별 교 부 금	0	119,507	△119,507	△100	
	증 액 교 부 금	176,123	162,753	13,370	8.2	
	국 고 보 조 금	19,796	21,225	△1,429	△6.7	
	특 별 회 계 전 입 금	450,721	490,500	△39,779	△8.1	
	계	6,550,078	7,184,206	△634,128	△8.8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정	4,032,459	4,138,184	△105,725	△2.6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15,914	21,125	△5,211	△24.7
		기초자치단체	23,800	12,780	11,020	86.2
		소 계	39,714	33,905	5,809	17.1
	계	4,072,173	4,172,089	△99,916	△2.4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1,487	8,067	3,420	42.4	
자체수입		134,517	126,384	8,133	6.4	
기 타	전 년 도 이 월 금	61,451	1,385,345	△1,323,894	△95.6	
	금 용 자 산 회 수	830	15,430	△14,600	△94.6	
	계	62,281	1,400,775	△1,338,494	△95.6	
내부거래(기금전입금)		330,000	0	330,000	순증	
합 계		11,160,536	12,891,521	△1,730,985	△13.4	

- 한편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4%, 5.8%, 3.8% 각각 증가한 7조 956억 8백만원, 9,969억 9천 1백만원, 2조 2,256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기관운영비는 1천 6백만원 감액된 392억 8천 7백만원, 시설사업비는 2,305억 3천 7백만원 감액된 7,829억 4천만원, 재무활동은 1조 2,344억 3천 9백만원 감액된 5천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688억 9백만원 감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4% 감소한 규모이나, 2023년도 예산안이 당시 세수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안보다 21.7%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액 평균이 10조 8,267억 3백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안 규모 자체는 지난 4년간 예산 규모보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입니다.
- 금번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의 총 규모는 10조 6,337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11조 3,643억 6천 2백만원) 대비 7,306억 2천 4백만원(△6.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3]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²⁾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6,550,078	58.7	7,184,206	55.7	△634,128	△8.8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072,173	36.3	4,172,089	32.4	△99,916	△2.4
기 타 이 전 수 입	11,487	0.1	8,067	0.1	3,420	42.4
합 계	10,633,738	95.1	11,364,362	88.2	△730,624	△6.4

가)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31쪽~40쪽, 사업별 설명자료 3쪽~11쪽)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795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 6,724억 8천 1백만원)보다 5,929억 2천만원(△8.9%) 감소하였습니다.

2) 구성비는 전체 예산 규모대비 세입 구성 비율임.

[표-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 교육세 - 유아교육지원회계 전출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전출분)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3%)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표-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보 통 교 부 금	5,903,438	52.9	6,390,221	49.6	△486,783	△7.6	5,903,438	0
특 별 교 부 금	0	0.0	119,507	0.9	△119,507	△100.0	0	0
증 액 교 부 금	176,123	1.6	162,753	1.3	13,370	8.2	176,123	0
계	6,079,561	54.5	6,672,481	51.8	△592,920	△8.9	6,079,561	0

㉠ **보통교부금**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3)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로서,

정부(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의 97% 및 교육세 일부” 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입니다.⁵⁾

-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5조 9,034억 3천 8백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보통교부금(6조 3,902억 2천 1백만원)보다 4,867억 8천 3백만원(△7.6%) 감소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보통교부금의 감소는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세수 재추계 결과, 내년도 국세수입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59.1조원(△14.8%) 감소가 예상되고,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되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9.0% 감액된 66조 8,841억원으로 편성·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전입금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내용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A×B)×C-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5) 보통교부금은 시·도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포괄적 교부금임.

○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2023년부터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과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이 발생하게 되어 그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표-6]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측정항목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증감내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주요 증감사유	
보통교부금 (① - ②)		5,903,438	6,390,221	△486,783	△7.6		
기준재정수요 ①	합 계	10,369,054	11,798,149	△1,429,095	△12.1		
	교직원인건비	6,448,738	6,649,475	△200,737	△3.0	교원인건비 감소	
	학교운영비	2,108,775	1,921,625	187,150	9.7	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상향 조정	
	교육행정비	102,849	105,266	△2,417	△2.3		
	교육복지지원비	328,046	250,393	77,653	31.0	배려계층 지원 산정 방식 절대량 기준 개 선으로 증가	
	교육기관등시설비	943,030	869,811	73,219	8.4	학교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증설비 증가	
	유아교육비	113,409	88,922	24,487	27.5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비(5세 추가 지 원분) 수요 반영	
	방과후학교사업비	91,236	84,528	6,708	7.9	방과후학교사업지원, 초등 돌봄 지원 증가	
	고교무상교육지원비	191,568	182,701	8,867	4.9		
	재정결함보전	30,755	1,649,312	△1,618,557	△98.1	재정안정화지원 수요 미반영	
	자체 노력 수요	소 계	10,647	△3,884	14,531	△374.1	
		학교·학급통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20,000	1,000	19,000	1900.0	학교 통합합 인센티브 증가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0	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5,647	5,116	531	10.4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5,000	△11,000	△4,000	△36.4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률 및 불용률 패널티 증가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상반기예산집행비율)	-	1,000	△1,000	△100.0			
기준재정수입 ②	합 계	4,465,616	5,407,928	△942,312	△17.4		
	법정전입금	소 계	4,270,131	5,225,226	△955,095	△18.3	
		지방교육세	1,788,786	2,339,602	△550,816	△23.5	
		시·도세	2,024,202	2,417,080	△392,878	△16.3	당해분 및 전전년도 정산분 감소
담배소비세	272,529	302,323	△29,794	△9.9	당해분 및 전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측정항목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증감내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주요 증감사유
						정산분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16,861	116,297	564	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6,960	4,809	2,151	44.7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	36,209	36,228	△19	△0.1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24,722	8,887	15,835	178.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778	0	3,778		
	고 교 무 상 교 육 증 액 교 부 금	176,123	165,301	10,822	6.5	
	고 교 무 상 교 육 전 입 금	15,445	17,400	△1,955	△11.2	

㉠ 특별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특별교부금	0	0.0	119,507	0.9	△119,507	△100	0	0

○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3조 및 제5조의2에6)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국가지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입니다.

6)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생략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지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⑥(생략)

- 그러나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의 교부 통지 및 내역 등이 예산안 편성 제출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향후 예산총칙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후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㉔ 증액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증 액 교 부 금	176,123	1.6	162,753	1.3	13,370	8.2	176,123	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와⁷⁾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중 국가부담 47.5%(서울시 4.5%, 서울시교육청 48%)를 반영한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2023년도 본예산 1,627억 5천 3백만원보다 133억 7천만원(8.2%) 증액된 1,761억 2천 3백만원(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5850)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러한 증액교부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칙<법률 제16673호, 2019.12.3>에서 국가부담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증액교부금	19,796	0.2	21,225	0.2	△1,429	△6.7	0	19,796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197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급여(1억원, 0.6%)’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10억 3천 1백만원, △4.9%)’, ‘학교흡연예방교육(△4억 9천 3백만원, △15.9%)’,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5백만원, △1.4%)’이 감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표-7] 국고보조금 편성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2024년도	2023년도
1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	15,737	15,637
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흡연예방교육	2,615	3,108
3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359	364
4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1,085	2,116
합 계			19,796	21,225

③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특별회계전입금	450,721	4.0	490,500	3.8	△39,779	△8.1	0	450,721

- 금번 예산안의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 수 감소로 인해 2023년도 본예산 보다 397억 7천 9백만원 감액된 4,507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8)에 따라 2025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2017년 처음 세입과 목이 생긴 이후 2차례 한시 기한을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한 분담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재원 분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41쪽~54쪽, 사업별 설명자료 12쪽~17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바,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999억 1천 6백만원(△2.4%) 감소한 4조 721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 부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1.>

9)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8]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광역	금액	3,450,149	3,593,144	4,043,928	4,148,553	4,036,970
	증감	284,207	142,995	450,784	104,625	△111,583
기초	금액	2,598	12,406	23,205	23,536	35,203
	증감	△904	9,808	10,799	331	11,667
합계	금액	3,452,747	3,605,550	4,067,133	4,172,089	4,072,173
	증감(비율)	283,303 (8.9%)	152,803 (4.4%)	461,583 (12.8%)	104,956 (2.6%)	△99,916 (△2.4%)

① 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증감사유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지방교육세 (지방전액)	1,811,356	1,926,002	△114,646	△6.0	1,811,356		지방교육세 세수 감소
담배소비세 (4.5%)	257,277	261,992	△4,715	△1.8	257,277		담배소비세 세수 감소
시도세 (10% 및 보전분)	1,817,974	1,806,223	11,751	0.7	1,817,974		국가지방이양사업보전금증가
합교담용징	1,988	1,988	0	0.0	1,988		
지방교육재정	116,861	116,297	564	0.5	116,861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
교육급여보조금	10,491	10,424	67	0.6		10,491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인상
무상교육경비	16,512	15,258	1,254	8.2		16,512	
소계	4,032,459	4,138,184	△105,725	△2.6	4,005,456	27,003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023년도 본 예산 보다 1,057억 2천 5백만원 감액된 4조 324억 5천 9백만원(△ 2.6%)이 편성되었습니다.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세 수입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서울시가 내년도 관련 세수에 대한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2023년도 본예산 보다 각각 1,146억 4천 6백만원(△ 6.0%), 47억 1천 5백만원(△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¹⁰⁾.

○ 반면 지방세 수입 중 시도세전입금은 시도세전입금(1조 7,570억 4천 3백만원)과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362억 9백만원) 및 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금(247억 2천2백만원)으로 이루어지는바,

금번 시도세전입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11)에 따른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을 위한 교육청의 안분액이 종전보다 158억 3천 5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보다 117억 5천 1백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¹²⁾(공진초, 공항초, 마곡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¹³⁾, 교육급여보조금¹⁴⁾, 무상교육경비 전입금¹⁵⁾ 등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의 부담분으로서 총 1,458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10) ○ 지방세 전입금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7개 세목
 -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 11)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2호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 서울특별시 24,722(백만원)

-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13)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2호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times B) \times C - D$ <p>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p> <p>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p> <p>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p> <p>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p>
--

-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 제43조의2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증감사유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광역자치단체	15,914	21,125	△5,211	△24.7	0	15,914	교육경비보조금 감소
기초자치단체	23,800	12,780	11,020	86.2	0	23,800	개포도서관건립 자치구 분담금 편성
소 계	39,714	33,905	5,809	17.1	0	39,714	

○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¹⁶⁾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¹⁷⁾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7)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다른 재원을 세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금번 비법정이전수입은 서울시 전입금 159억 1천 4백만원과 자치구 전입금 238억원 등 397억 1천 4백만원이며, 이는 2023년도 본예산(339억 5백만원)보다 58억 9백만원(17.1%) 증액된 것입니다.

- 비법정이전수입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입학준비금 159억 1천 4백만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입학준비금에 대한 분담금 117억원과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강남구청 전입금 1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특히 서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세수 감소에 따라 입학준비금 분담금만을 지원하는 단일사업비만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8)에 따른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1천 1백만원 감액된 75.3%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9] 2023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예산(안)		
		금액	증감액	증감률
계	29,079	15,914	△13,165	△45.3%
일반교육지원사업	27,304	15,914	△11,390	△41.7%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600	-	-	-
입학준비금	17,268	15,914	△1,354	△7.8%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	-	-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776	-	-	-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	-	-
대안교육기관 지원	7,000	-	-	-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18)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별교육지원사업	1,775	-	-	-
----------	-------	---	---	---

다) 기타이전수입(예산안 55쪽~60쪽, 사업별 설명자료 18쪽~19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1,487	0.1	8,067	0.1	3,420	42.4	3,475	8,012

- 금번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평가 지원금’ 63억 4천 6백만원과 ‘도신초증축 기부채납’ 16억 6천 6백만원 및 ‘농협 교육 금고 약정 지원금’ 34억 7천 5백만원 등 2023년도 보다 34억 2천만원 증액(42.4%)된 114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증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고사시행 지원금이 2023년 (47억 7천 2백만원)보다 15.4%(55억 5백만원) 증액되었고, 도신초 증축에 따른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의 기부채납비(55억 5천 3백만원)가 일부(16억 6천 6백만원) 증액됨에 따른것입니다.

2) 자체수입(예산안 61쪽~108쪽, 사업별 설명자료 21쪽~43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교수학습활동수입	1,521	0.0	1,319	202	15.3	1,521	8,012
행정 활동 수입	5,597	0.0	5,341	256	4.8	5,597	0
자 산 수 입	8,875	0.1	33,573	△24,698	△73.6	8,875	0
이 자 수 입	11,819	0.1	11,819	0	0.0	11,819	0
기 타 수 입	106,705	0.9	74,332	32,373	43.6	106,705	0
계	134,517	1.1	126,384	8,133	6.4	134,517	0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23년 본예산 보다 81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1,345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 2백만원 증액된 15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이후 대면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른 문화강좌 등 수강료 수입인 ‘선택적교육수입’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입니다.
- 그리고 ‘사용료 수입’ 과 ‘수수료 수입’ 으로 이루어진 ‘행정활동 수입’ 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5천 6백만원 증액된 55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임대료 수입’ 과 ‘토지매각’ , ‘기타 유형자산매각’ 및 ‘무형자산매각’ 으로 이루어진 ‘자산 수입’ 은 토지 매각이 예상되는 건에 한 하여 보수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보다 246억 9천 8백만원 감액된 88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 밖에 ‘이자수입’ 은 이전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18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재금 수입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과 ‘기타수입 등(생산물매각대, 그 외 수입,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으로 이루어진 ‘기타수입’ 은 보조금 등 반납금 수입이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편성됨에 2023년도 본예산 보다 323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1,067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기타(예산안 109쪽~124쪽, 사업별 설명자료 45쪽~54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전년도이월금	61,451	0.8	1,385,345	△1,323,894	△95.6	61,451	0
금융자산회수	830	0.0	15,430	△14,600	△94.6	830	0
계	62,281	0.8	1,400,775	△1,338,494	△95.6	62,281	0

- 금번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 은 2023년도 본예산 보다 1조 3,238억 9천 4백만원(△95.6%) 감액된 614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금융자산회수’ 는 3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 보증금 회수액 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편성된 ‘내부유보금’ 1조 663억 3천 8백만원이 2023년 세출예산으로 편성·운영됨에 따라 금번 본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감액폭이 높아졌으며, 2023년도 결산 전망에 따른 추계액은 614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기 금 전 입 금	330,000	3.0	0	330,000	순증	330,000	0
계	330,000	3.0	0	330,000	순증	330,000	0

- 금번 ‘내부거래’ 는 기금전입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현재 설치·운용중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656억 5천 3백만원 중 3,30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 세입예산안 주요 사항 검토

1) 기금전입금 세입 조치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해 그동안 설치·운영하였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적립된 기금을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기금법」 제16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정기금입니다.
- 다만 해당 기금의 사용 조건과 범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 총액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기금 조례에서 규정¹⁹⁾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에서는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이 본예산 기준인지 결산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 3년 세입 평균 금액을 본예산의 세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도 최종 세입 결산 이전의 불명확한 추계치가 기금 사용을 위한 판단 기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한편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최종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입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인 교육청의 세입 구조상, 세입 규모는 본예산보다 추경을 반영한 결산시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결국 본예산안 편성시 안정화기금을 언제든지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화기금 조례에 규정된 기금 사용 기준을 형해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안정화기금 사용을 위한 ‘과거 3년의 세입’ 기준은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지출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지출여부를 결산액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입으로 3,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물론 현재 교육청의 세입예산안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안정화 기금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도 사용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기금 사용 규모가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발생하는바, 기금전입금 규모의 적절성 역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지출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지출은 과거 3년 세입규모와 함께 해당 연도 예산안 세입 규모 또한 기준이 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사용을 위해 자의적으로 세입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표-10] 안정화 기금 사용을 위한 검토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3년 평균(A)	2024**(B)	(B-A)
결산 기준 세입	12,202,397	14,738,178	13,553,736	13,498,104	10,830,536	△2,667,568
본예산 기준 세입	9,741,994	10,588,635	12,891,521	11,074,050	10,830,536	△243,514

* 2023년 세입액: 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반영

** 2024년 세입액: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3,300억원 제외

2) 이자수입에 대한 검토

- 금번 예산안의 “이자수입”은 118억 1천 9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대비 245억 9천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금을 교육금고에 단기 또는 중·장기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과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크게 정기예금 이자와 기타예금 이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동 세입은 교육금고 은행인 NH 농협은행과의 약정서에 근거해 설정된 이율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누적 변동률이 $\pm 3\%$ 이상일 때 그 변동률만큼 기준금리를 조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²⁰⁾

- 따라서 이자수입은 수입금의 규모와 예치 시기,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변동되는 경제 상황과 중앙정부 등의 교부금 교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규모 감소 및 이자율 변동, 금고운용 여건이 큰 폭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자 수입을 적정하게 추계하였는지 아니면 세입규모의 감소를 위해 일부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분석해보면, 연도별로 1%p 이상 금리차가 발생할 정도로 기준금리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고, 월별로도 0%p에서 0.62%p 수준에서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20) 서울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별표 1] 참조.

즉, 이자수입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되는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최근 그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자수입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의 예측은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표-11] 최근 1년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²¹⁾

(단위 : %, %p)

월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금리	3.35	3.97	4.3	4.29	3.87	3.53	3.53	3.41	3.5	3.65	3.63	3.59	3.74
월별 금리차		-0.62	-0.33	0.01	0.42	0.34	0	0.12	-0.09	-0.15	0.02	0.04	-0.15

[표-12] 2019~2022년 연평균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²²⁾

(단위 : %, %p)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9.
금리	1.74	1.04	1.05	2.73	3.61
연도별금리차		-0.70	0.01	1.68	0.88

- 더욱이 이자수입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교육금고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률 개선 조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세입 증대도 일부 확인되는바,²³⁾

세수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세입 감소율에 비해 작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21)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10.27.), 「2023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참조.

22) 위의 글.

23)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약정 당시 책정된 가산금리가 마이너스(-)이고, 협력 사업의 출연금 역시 저조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교육금고 운용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 잔액을 최소화 하고,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이자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힘.

[표]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 증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0.5. 기준
이자수입	13,718	5,963	18,976	27,116

(자료 :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3차)」, 369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2.11.10., 2022.11.11., 2022.11.14. 등)을 참조하였으며, 금고 운용 개선에 따른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영 개선사항 보고(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2023.4.)」 및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3차)」, 369쪽을 참조하였음.

- 그러나 세수 여건 악화로 재정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자수입의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서도 예측했듯이 유아 수 감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자수입이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측(추계)은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자수입 추계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이와 같은 세입예산의 부적절한 추계는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 운영의 사례인 바,²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사정 부서의 각성과 함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세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과소하게 세입을 산출하여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이례적인 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 규모

- 금번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은 614억 5천 1백만원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전망에 따른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²⁵⁾ 따라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²⁶⁾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²⁷⁾.
-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이를 세입에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다음연도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당해연도 본예산의 과다계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본예산 기준 연평균 6,634억 3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

2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26)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27)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년도 불용추정액의 평균 87.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표-13]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 세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금 액	전 년 대 비		본 예 산	비 율	최 종 예 산	비 율
		증 감	비 율				
2 0 2 3	400,834	△920,598	△69.7	61,451	15.3		
2 0 2 2	1,321,432	863,222	188.4	1,385,345	104.8	1,321,431	100
2 0 2 1	458,208	131,899	40.4	324,342	70.8	458,208	100
2 0 2 0	326,309	△54,833	△14.4	280,604	86.0	326,309	100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전년도 불용추정액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15.3%에 불과한 614억 5천 1백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예외적으로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고 회신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971.),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조례상 허용 최대치까지 세입으로 전입하는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가능한 예외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입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종전과 달리 15.3%만 편성하였는 바 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를 세입에 편입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불안정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검토

- 금번 예산안의 이전수입은 10조 6,337억 3천 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안의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²⁸⁾,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본예산안에 특별교부금을 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금번 세입예산안 중 특별교부금의 미편성은 종래와 달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계획이 교육청의 예산안 확정일인 10월 18일까지 교육청에 내시 통보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라 서울시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표-14] 특별교부금 미편성 경과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특별교부금 확정알림	2022.10.7.	2023.10.20.	전년 대비 13일 지연
교육부 사업부서별 세부 교부계획 알림	2022.10.7. ~ 10.17.	2023.10.25. ~ 11.13. 현재까지 알림 중	전년 대비 8~18일 지연
사업부서 특별교부금 세출요구	2022.10.7. ~ 10.17.	요구 불가	23.10.20.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의 특별교부금 확정공문은 시도교육청별 총교부금액 알림으로 세부 사업별 계획 확인불가로 예산안 확정전 세출요구는 불가
예산안 확정일	2022.10.18.	2023.10.18.	

-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시도교육청으로의 사업이 양 및 지원 중단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의 사유(국가지책 사업수 ‘23년 166개→ ‘24년 30개 내외)로 시도교육청 통지가 늦어졌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다고 밝히고 있습니다²⁹⁾).

[표-15] 2024년 제1차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체	서울
1. 국가책임 교육·돌봄	448,823	33,411
01. 유보통합	3,900	0
02. 유아교육	45,000	2,008
03. 늘봄학교	180,000	6,281
04. 기초학력보장	200,000	23,483
05. 특수교육	19,923	1,639
2. 디지털 교육혁신	191,142	21,103
06. 디지털 역량 제고	23,180	3,348
07. 디지털 기반 구축	150,000	16,518
08. 디지털 교과서 개발	17,962	1,237
3. 공교육 경쟁력 제고	169,422	20,513
09. 교육과정	34,450	974
10. 교과교육지원	7,625	914
11. 미래교육 체제구축	20,943	2,985
12. 교수학습 자료개발	6,388	481
13. 예술·체육교육	62,100	11,014
14. 창의융합교육	6,116	531
15. 글로벌교육지원	10,500	1,306
16. 교육전념 여건조성	13,800	1,478
17. 교원역량강화	4,917	615
18. 학부모교육	2,583	215
4. 교육복지 지원	66,120	5,754
19. 이주배경 학생지원	29,020	2,541
20. 학생성장 통합지원	37,100	3,213
5.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6,770	4,950
21. 학생안전	5,070	268
22. 학생건강	25,104	2,281
23. 학폭대응	24,646	2,279
24. 양성평등	1,950	122
6. 진로·직업교육	122,473	15,188
25. 직업교육	70,000	5,080
26. 진로교육	6,229	391
27. 진학지원	46,244	9,717
7. 행·재정지원	26,699	3,640
28. 과학행정체계 구축	3,000	239
29. 교육정보화 지원	3,060	436
30. 행·재정운영지원	20,639	2,965
합계	1,081,449	104,559

○ 이와 같은 특별교부금은 내년도 29개 사업에 1,045억 5천 9백만원으로(전년도 대비 △12.5% 감액) 해당 세입이 금번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29) '2023년 제4차 및 2024년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확정 내역 알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786..(2023.10.20.)

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2,650억 9천 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을 것 인바, 내시 통보시기의 지연으로 늦어진 동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고 추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은 2023년도 본예산(6조 3,902억 2천 1백만원)기준 7.6% 감액된 5조 9,034억 3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산은 2023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내시액보다 감액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당초 교육부 내시액보다 9,132억원의 보통교부금 배정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³⁰⁾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통교부금 예산 중 10.6조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전하지 않고 불용할 계획인바, 이와 같은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 없이 해당 연도에 확정된 교부금을 감액 결정³¹⁾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³²⁾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처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당해 연도 감액 교부하고 통합안정화기금 등 자체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세입 구조상 재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확정금액에 의한 교부가 아닌 규모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2028년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

30)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3년도 세입(수입) 전망', 서울시교육청, 1,481쪽 참조

31)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예상, 여유재원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9.18.

32)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로 전망³³⁾하고 있는바, 향후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예산을 통한 교육사업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규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상, 이전수입이 2023년도와 같이 예측과 실제 세수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거나, 교육부의 통보 지연에 따른 세입 미편성의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가변적일 수 있는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수입의 불확실성과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24쪽 참조.

5) 서울시 비법정전입금(교육경비보조금) 규모 축소에 대한 검토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등의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³⁴⁾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2024년도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2023년도 기준 7개 사업 275억 7천 9백만원에서 입학준비금 단일 사업비 159억 1천 4백만원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 더욱이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2023 서울특별시 예산(안)」 중 보통세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서울시가 통보한 금번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는 서울시 예산안 기준 보통세 수입의 0.09%에 불과하여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인 0.6%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표-16] 최근 5년간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연 도	편 성 기 준 액 * (A)	서 울 시 보 조 금 통 보 액		최 종 편 성 액	
		금 액 (B)	비 율 (B / A)	금 액 (C)	비 율 (C / A)
2 0 2 4	18,443,450,000	15,914,000	0.09	-	-
2 0 2 3	18,355,853,000	27,579,000	0.15	29,079,000	0.15
2 0 2 2	16,880,579,000	51,984,000	0.31	51,984,000	0.31
2 0 2 1	14,489,874,000	47,376,000	0.33	54,376,000	0.38
2 0 2 0	14,496,136,000	53,300,000	0.37	67,299,000	0.46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총액 기준

3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 더욱이 서울시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일반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10 이내로 지원하는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을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이와 같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해당 범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해당 재원 역시 이전수입의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교육재정의 큰 손실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한 교육 재원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정 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7] 예산안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계	51,984	29,079	15,914
일반교육지원사업	46,786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19,100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420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600	600	
입학준비금	17,080	17,268	15,914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1,000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27,686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	776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1,080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7,300		
학교CCTV교체 지원	1,535		
미래형 교실 구축	940		
학교 체육관 건립	2,400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2,100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346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660	
학교급식노후 조리기구 현대화사업	4,000		
지역사회 결합형 학교 지원	1,125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 진흥 캠페인	500		
학교 학습공간 시설개선 지원	2,000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2,000		
대안교육기관 지원	-	7,000	
특별교육지원사업	5,198	1,775	-

라. 세출예산안

-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조 7,309억 8천 5백만원(13.4%) 감소한 11조 1,605억 3천 6백만원입니다.
- 경직성경비 중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661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7조 956억 8백만원, 기관운영비 등 경상비는 전년도보다 549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조 362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비경직성경비 중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16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2조 2,256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305억 5천 7백만원이 감소된 7,82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재무활동비(기금전출금)는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5,688억 9백만원 감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18] 세출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건비	공무원	4,609,045	41.3%	4,496,371	112,674	2.5%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165,492	10.4%	1,121,581	43,910	3.9%	
	사립학교	1,321,072	11.9%	1,311,502	9,570	0.7%	
	계	7,095,608	63.6%	6,929,454	166,154	2.4%	
경상비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9,287	0.4%	39,303	△16	0.0%	
	학교 운영비	공립	745,649	6.7%	668,593	77,056	11.5%
		사립	251,342	2.2%	273,428	△22,086	△8.1%
		계	996,991	8.9%	942,021	54,970	5.8%
계	1,036,278	9.3%	981,324	54,954	5.6%		

사업비	교육사업비		2,225,658	19.9%	2,143,966	81,692	3.8%
	시설 사업비	학교신증설	49,612	0.4%	62,122	△12,510	△20.1%
		일반시설	647,732	5.8%	882,640	△234,908	△26.6%
		급식시설	85,596	0.8%	68,715	16,881	24.6%
		소계	782,940	7.0%	1,013,477	△230,537	△22.7%
계		3,008,598	26.9%	3,157,443	△148,845	△4.7%	
재무 활동	지방채 상환 등		52	0.0%	52	-	0.0%
	BTL상환		-	0.0%	-	-	0.0%
	기금전출금		-	0.0%	1,234,439	△1,234,439	△100.0%
	계		52	0.0%	1,234,491	△1,234,439	△100.0%
예비비 및 기타		20,000	0.2%	588,809	△568,809	△96.6%	
합 계		11,160,536	100.0%	12,891,521	△1,730,985	△13.4%	

- 금번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51.8%(5조 7,745억 3천 7백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45.5%(5조 919억 7천 2백만원)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5조 7,745억 3천 7백만원)’는 전년도(5조 6,179억 5천 3백만원) 대비 2.8%(1,565억 8천 4백만원) 증가되었고 인건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계약제 교원의 퇴직금,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장애인고용부담금),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 예산은 5조 919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5조 1,552억 2천 7백만원) 대비 1.2%(632억 5천 5백만원) 감소되었는 바,
 - 감소된 주된 원인은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 중 창호 및 바닥, 외벽개선 및 도장공사 등 노후시설개선 사업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 중 ‘교수학습활동지원’은 7,558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5,820억 9백만원) 대비 29.9%(1,737억 9천 7백

만원)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주요 원인은 ‘대안교육기관지원’, ‘안전인프라구축’, ‘특성화고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 외 ‘예비비 및 기타’ 는 200억원으로 전년도(5,888억 9백만원) 대비 96.6%(5,688억 9백만원)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예비비 및 기타’ 사업중 내부유보금(5,688억 9백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교육일반의 ‘재무활동’ 은 전년도(1조 2,344억 9천 1백만원) 대비 100%(1조 2,344억 3천 9백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무활동’ 사업중 ‘기금전출금’ (1조 2,344억 9천 1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표-19] 정책사업별 세출내역

(단위 :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인적자원운용	66,392	0.6	67,170	△778	△1.2	66,392	0
	교수학습활동지원	755,806	6.8	582,009	173,797	29.9	748,016	7,790
	교육복지	749,156	6.7	754,315	△5,159	△0.7	244,593	504,563
	보건급식	538,027	4.8	615,262	△77,235	△12.6	535,412	2,615
	학교재정지원관리	2,318,063	20.7	2,253,523	64,540	2.9	2,301,551	16,512
	학교시설여건개선	664,528	5.9	882,948	△218,420	△24.7	662,862	1,666
	소 계	5,091,972	45.5	5,155,227	△63,255	△1.2	4,558,826	533,146
평생 교육	평생교육	30,426	0.3	34,808	△4,382	△12.6	30,426	0
	소 계	30,426	0.3	34,808	△4,382	△12.6	30,426	0
교육 일반	교육행정일반	171,447	1.5	159,117	12,330	7.7	171,447	0
	기관운영	72,102	0.7	101,116	△29,014	△28.7	60,002	12,100
	재무활동	52	0.0	1,234,491	△1,234,439	△100	52	0
	소 계	243,601	2.2	1,494,724	△1,251,123	△83.7	231,501	12,100
예비비	예비비 및 기타	20,000	0.2	588,809	△568,809	△96.6	20,000	0
	소 계	20,000	0.2	588,809	△568,809	△96.6	20,000	0

인건비	인 건 비	5,774,537	51.8	5,617,953	156,584	2.8	5,774,537	0
	소 계	5,774,537	51.8	5,617,953	156,584	2.8	5,774,537	0
합	계	11,160,536	100	12,891,521	△1,730,985	△13.4	10,615,290	545,246

- 금번 예산안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인건비는 7조 956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6조 9,294억 5천 4백만원) 대비 2.4%(1,661억 5천 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관운영비는 392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393억 3백만원)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학교운영비는 9,969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9,420억 2천 1백만원) 대비 5.8%(549억 7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사업비(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3조 85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3조 1,574억 4천 3백만원) 대비 4.7% 감소되었습니다.
 - 사업비가 감소된 주된 요인은 시설사업비(7,829억 4천만원)가 전년도(1조 134억 7천 7백만원) 대비 22.7%(2,305억 3천 7백만원)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시설사업비 중 일반시설 사업비가 전년도(8,826억 4천만원) 보다 가장 큰 폭(26.6%)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반면 교육사업비는 2조 2,256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2조 1,439억 6천 6백만원) 대비 3.8%(816억 9천 2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교육복지 사업 중에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돌봄서비스연계강화’ 사업, 교육행정일반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운영’, ‘K-에듀파인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중 ‘대안교육기관지원’, ‘민주시민교육강화’ 등의 예산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표-20] 교육사업비 증 전년도 대비 증감율이 높은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구분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내역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금액(A-B)	비율
교수학습지원	학지	민주시민교육강화	383	10	373	3728.6%
	대안교육지원	대안교육기관지원	6,210	205	6,005	2928.4%
교육복지	교육복지지원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180	18	162	903.5%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홍보	교육정책설명및언론홍보	1,140	199	941	472.4%
	정보보안리	K-에듀파인및기록관리	1,743	23	1,720	7526.0%
	정보보안리	정보화기획	13,412	2,296	11,116	484.1%
	예산관리	주민참여예산운영	859	30	829	2764.0%

[표-21] 시설사업비 증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 높은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구분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내역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금액(A-B)	비율
학교시설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	도장공사	5,104	20,281	△15,177	△74.8%
	학교시설환경개선	바닥개선	12,857	59,106	△46,249	△78.2%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10,541	51,545	△41,004	△79.5%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개선	14,712	74,406	△59,694	△80.2%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6,059	13,632	△7,573	△55.6%
	학교시설환경개선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	490	1,901	△1,411	△74.2%
	학교시설환경개선	창호개선	12,118	107,633	△95,515	△88.7%

-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1조 2,344억 9천 1백만원) 대비 거의 100%(1조 2,344억 3천 9백만원) 감액되었는바, 이는 금번 세출예산에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 예산의 전체 규모가 감소된 상황에서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보다 증가(8.0%)하고 교육비 및 시설사업비 등의 비경직성 경비는 전년도보다 더 감소(△4.7%)되고 있는바,

이러한 예산 운용은 교육청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인건비	공무원	4,609,045	41.3	4,496,371	112,674	2.5	4,609,045	0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1,165,491	10.4	1,121,581	43,910	3.9	1,165,491	0	
	사립학교	1,321,072	11.9	1,311,502	9,570	0.7	1,321,072	0	
	계	7,095,608	63.6	6,929,454	166,154	2.4	7,095,608	0	
경상비	교육행정기관비	39,287	0.4	39,303	△16	0.0	39,287	0	
	학교운영비	공립	745,649	6.7	668,593	77,056	11.5	745,649	0
		사립	251,342	2.2	273,428	△22,086	△8.1	234,831	16,511
		소계	996,991	8.9	942,021	54,970	5.8	980,480	16,511
	계	1,036,278	9.3	981,324	54,954	5.6	1,019,767	16,511	
사업비	교육사업비	2,225,658	19.9	2,143,966	81,692	3.8	1,710,689	514,969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49,612	0.4	62,122	△12,510	△20.1	49,612	0
		일반시설	647,732	5.8	882,640	△234,908	△26.6	633,966	13,766
		급식시설	85,596	0.8	68,715	16,881	24.6	85,596	0
		소계	782,940	7.0	1,013,477	△230,537	△22.7	769,174	13,766
	계	3,008,598	26.9	3,157,443	△148,845	△4.7	2,479,863	528,735	
재무활동	지방채상환등	52	0.0	52	0	0.0	52	0	
	기금전출금	0	0.0	1,234,439	△1,234,439	△100	0	0	
	계	52	0.0	1,234,491	△1,234,439	△100	52	0	
예비비 및 기타	20,000	0.2	588,809	△568,809	△96.6	20,000	0		
합계		11,160,536	100	12,891,521	△1,730,985	△13.4	10,615,290	545,246	

○ 한편 세출예산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의 지난 5년간 추이를 분석해보면, 교육사업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은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보건·방역사업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43.1%까지 증가되었습니다.

- 2024년도에는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이 다시 35.2% 감소하

였으나 시설사업을 위해 2021년에 설치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전출금을 살펴보면 2021년 3,184억 1천 1백만원, 2022년 9,713억 8천만원, 2023년 2,702억 1천 7백만원, 2024년 314억 2천만원, 총 1조 5,914억 2천 8백만원으로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시설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가용 가능한 비경직성 경비 중 ‘시설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바,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 기초학력보장과 미래 교육 대비 등을 위해 시설사업 대비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3] 최근 5년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대비 시설사업비(A/B)
2020	10,084,661	895,183	2,067,774	43.3
2021	9,741,994	517,413	1,867,759	27.7
2022	10,588,635	744,624	2,262,237	32.9
2023	12,891,521	1,012,743	2,349,180	43.1
2024	11,160,536	782,940	2,225,658	35.2

[표-24]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의 연도별 조성액

(단위: 천원, %)

연도별	조 성 액		
	계 (a)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2021	318,411,000	318,411,000	0
2022	971,380,048	967,841,767	3,538,281
2023	270,216,640	231,500,000	38,716,640
2024	31,420,318	0	31,420,318
계	1,591,428,006	1,517,752,767	73,675,239

마.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 검토

1) 인건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금번 예산안의 인건비는 7조 956억 8백만원으로 2023년도 전년도 보다 1,661억 5천 4백만원(2.4%)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24년도 전체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63.6%로 2023년(53.8%) 보다 9.8%p 증가되었습니다.
- 인건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인건비, 사립학교인건비로 구분되며, 대상별로 보수, 퇴직수당, 법정부담금, 맞춤형 복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보수인상률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퇴직자 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액 등은 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로 인한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교원 및 근로자의 인원이 증가하여 보수 및 법정부담금, 맞춤형 복지비 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해가는 교육 환경 및 교육 예산 개편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규모가 확대되어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는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5] 연도별 전체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본예산	2023 본예산	2024예산안
전체 예산		10,588,635	12,891,521	11,160,536
인건비	비율	61.6%	53.8%	63.6%
	합계	6,526,961	6,929,454	7,095,608
	공무원인건비	4,427,567	4,496,371	4,609,045
	근로자인건비	824,887	1,121,581	1,165,491
	사립학교인건비	1,274,507	1,311,502	1,321,072

[표-26] 연도별 전체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A)	전년도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구성비	증감률 (C/B)
합계(①+②+③+④+⑤)	7,095,608	6,929,454	166,154	100.0%	2.4
①공무원인건비	4,609,045	4,496,371	112,674	65.0%	2.5
보수	3,435,920	3,413,188	22,732	48.4%	0.7
법정부담금	989,053	896,947	92,106	13.9%	10.3
명예퇴직수당	112,190	112,400	△210	1.6%	△0.2
맞춤형복지비	71,882	73,836	△1,954	1.0%	△2.6
②계약제교원인건비	404,426	370,686	33,740	5.7%	9.1
보수	337,347	311,097	26,250	4.8%	8.4
기타직 법정부담금	35,992	33,066	2,926	0.5%	8.8
맞춤형복지비	11,727	10,913	814	0.2%	7.5
퇴직금관리	19,360	15,610	3,750	0.3%	24.0
③계약제근로자인건비	39,147	33,653	5,494	0.6%	16.3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14,560	15,173	△613	0.2%	△4.0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운영	24,587	18,480	6,107	0.3%	33.0
④교육공무직원인건비	721,918	717,242	4,676	10.2%	0.7
교육공무직원통합인건비	707,365	704,677	2,688	10.0%	0.4
맞춤형복지비	14,553	12,565	1,988	0.2%	15.8
⑤사립학교인건비	1,321,072	1,311,502	9,570	18.6%	0.7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207,434	1,196,409	11,025	17.0%	0.9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58,560	59,000	△440	0.8%	△0.7
사립사무직원성과상여금	5,790	6,113	△323	0.1%	△5.3
맞춤형복지비	18,924	19,637	△713	0.3%	△3.6
교원 명예퇴직수당	29,520	29,600	△80	0.4%	△0.3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844	743	101	0.0%	13.6

2)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부실 및 오류

- 금번 서울시교육청이 최종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금액이 실제 편성 금액과 다른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먼저 예산담당관의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을 6,106억 3천 6백만원, 추경예산을 7,013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의결을 받은 2023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각 5,727억 6천 1백만원, 6,551억 6천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은 378억 7천 5백만원, 추경예산은 462억 1천 1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담당관의 ‘학교개별교부운영비’ 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에 746억 9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2023년도 학교개별운영비 본예산은 859억 7천 5백만원으로, 112억 8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표-27]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70,959,834	610,636,348	701,371,387	60,323,486	△30,411,553
학교기본운영비	670,959,834	610,636,348	701,371,387	60,323,486	△30,411,553

[표-28] 학교개별교부운영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4,689,570	95,399,578	좌동	△20710008	좌동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별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일 경우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란에 ‘신규사업’ 표시를 하고 있으나 초등교육과의 ‘협력학습참여적수업’의 경우 하위 사업으로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설명자료에 관련 설명을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29]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사업 예산 편성 자료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97,300	636,070	좌동	61,230	좌동	
생각을키우는교실운영	156,870	206,000	좌동	△49,130	좌동	
서울가나다서울구구단 서울ABC	-	414,210	좌동	△414,210	좌동	◦ 기 개발자료 활용 안내(비예산)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	488,840	-	좌동	488,840	좌동	
협력적평가방법개선지원	51,590	15,860	좌동	35,730	좌동	◦ 신규사업(학생평가 연구학교) 운영

- 또한 예산담당관의 ‘교육지원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 사업으로, 사업 설명 자료에 동 사업의 근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 제28조, 제39조~제41조를 기재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20조의2~ 제20조의4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제21조~제23조는 보건안전진흥원을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 내용과 무관한 조항인바 동 사업의 근거 조항 ‘제10조~제28조’는 ‘제10조~제20조, 제25조~제28조(학생체육관)’로 수정해야 합니다.
- 더욱이 ‘전편입학배정업무’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에 대한 증감사유를 지난 2차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예산안의 추계 및 검토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니다.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사업별 설명자료는 예산안의 수치 오류, 사업 설명 누락 및 내용 오류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안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1) 총론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이하 ‘성과계획서’ 이라 함)은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³⁵⁾ 및 제44조의2³⁶⁾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성과계획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사업비와 대외 공개가 곤란한 사항 등을 제외³⁷⁾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 등을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 금번 성과계획서는 2024년도 108개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 17개를 제외한 91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26.6%인 2조 9,966억 4천 3백만원으로, 2023년도(3조 485억 4천만원) 보다 818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표-30] 2024년 성과계획 대상 사업 수 예산액

(단위: 개, 천원)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	성과지표수	예산액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5	25	79	86	2,996,643,229	3,048,539,583	△81,896,354

35)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6)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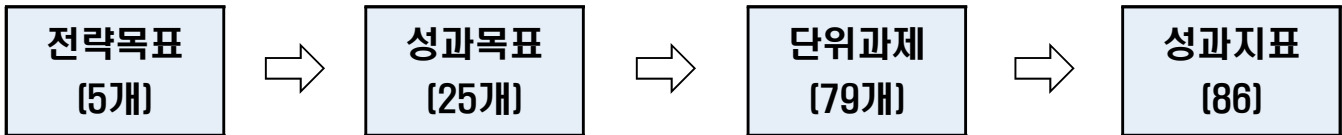
8. 성과계획서

9.~14. (생략)

37)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부, 2023.8., 23쪽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에 5개 전략목표와 25개 성과목표 및 79개 단위과제, 이에 따른 86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림-1]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2) 성과계획서의 구조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전략목표는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략목표의 수는 시·도교육청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또는 단위과제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간(연간)의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체계상 세부 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며,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사업 연계 시 단위사업 대 세부사업을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이때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에 대해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성과계획서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성과목표는 단기간(연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성과계획서 검토

[표-31]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단위: %, 천원)

전략목표명	성과목표명	예산액	비율
I. 더 질 높은 학교교육	I -1. 기초학력 책임지도	90,675,787	3.1
	I -2.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57,703,585	1.9
	I -3. 학생 주도성 및 학교 자율성으로 맞춤형 교육 실현	8,523,019	0.3
	I -4. 진로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지원	35,935,103	1.2
	I -5. 예체능 교육활동 강화	39,215,623	1.3
	I -6.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사 지원	24,755,414	0.8
	I -7. 학교혁신 지속 추진	11,092,702	0.4
II. 더 평등한 출발	II-1. 출발선 평등 실현	594,752,915	20.0
	II-2. 질높은 돌봄·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62,586,889	2.1
	II-3. 정의로운 차등 구현	62,139,556	2.1
	II-4. 학부모의 안정적인 자녀교육 지원	1,342,576	0.0
	II-5. 통합적 교육복지 실현	143,663,777	4.8
III. 더 따뜻한 공존교육	III-1. 생태전환교육 강화	1,459,030	0.0
	III-2. 세계시민성 함양	1,717,120	0.1
	III-3. 학교안팎,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69,087,136	2.3
	III-4. 학교 구성원 간의 공존	47,424,600	1.6
IV.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IV-1. 세계와 공존·연대하는 서울 학생으로 성장 지원	2,425,493	0.1
	IV-2. 미래를 대비하는 인공지능 교육 강화	3,306,850	0.1
	IV-3. 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 학습환경 구축	453,780,368	15.3
	IV-4.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조성	675,698,216	22.8
V. 더 건강한 안심교육	V-1. 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지원	2,658,070	0.1
	V-2. 학교 보건관리 및 교육환경 안전 강화	41,758,777	1.4
	V-3. 더 맛있고, 더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	500,685,699	16.9
	V-4.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6,591,889	0.2
	V-5.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27,663,035	0.9

- 금번 제출된 서울시교육청의 성과계획서는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그리고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개의 전략목표 아래 이를 위한 세부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2022~2026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4년간 목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연계되어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일부 항목에서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매년 동일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성과계획 전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과계획서를 예산과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 ‘현상의 유지’가 아닌 ‘현상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성과지표가 진취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2] 성과지표에 따른 부적정한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0.25	목표	90%	96.3%	96.3%	96.3%	96.3%	(당해연도 '매우만족', '만족' 응답자 수/응답자 수의 합)×100	설문 및 만족도 조사 (연1회)
		실적	96.29%	96.3%	-	-	-		
학부모사업 참여자 증가 비율	0.5	목표	105%	110%	105%	105%	105%	(당해연도 학부모 사업 참여자수/ 전년도 학부모사업 참여자수)×100	학부모사업 결과보고
		실적	113%	105%	-	-	-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도·감독 실시건수	0.5	목표	690건	695건	700건	705건	710건	11개 교육지원청 2024년도 지도 점검 총 건수 / 교육지원청 지도담당 공무원 수(31명)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실적 / 수합
		실적	866건	701건	-	-	-		
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0.1	목표	82.5%	86.6%	79.8%	84.6%	84.1%	(자문의견 중 예산편성 반영 건수 / 전체 자문의견 (비예산 제외) 제출 건수)×100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자문의견 반영 결과 등
		실적	86.3%	87.8%	-	-	-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0.2	목표	89.5%	90%	90%	90%	90%	{실제 이용자 (온라인 수련인원 포함) 총계/ 연간목표수련인 원수} ×100	주요업무계획 교육운영계획 교육운영일지 자체교육 실적통계
		실적	102.6%	110.9%	-	-	-		
창의융합형 과학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0.5	목표	88%	89%	90%	90%	91%	('만족' 이상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 ×100	창의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실적	98.4%	97.5%	-	-	-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0.2	목표	70%	70%	70%	70%	70%	(우선순위 반영액 / 예산편성액) ×100	예산서
		목표	70%	70%	-	-	-		

○ 또한, 일부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대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성과지표 전반에 있어 적절성이나 지표 종류³⁸⁾의 일관성 등이 미흡한

38) [내용에 따른 지표 종류]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 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 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 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 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채 관례적으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이나 개별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관행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공적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³⁹⁾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교육청은 2013회계연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33]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31개	170,460,269	191,156,198	△20,695,929	△10.8%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7개	46,350,754	53,056,956	△6,706,202	△12.6%
	성별영향평가사업	5개	18,530,577	20,149,949	△1,619,372	△8.0%
	교육부지정사업 (매년 교육부 장관이 여성이족부 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사업)	17개	104,336,878	116,515,903	△12,179,025	△10.5%
선택	자체사업 (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 추진하는 사업)	2개	1,242,060	1,433,390	△191,330	△13.3%

39)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금번 성인지 예산서는 31개 사업에 2023년보다 206억 9천 6백만원 (△10.8%)이 감소한 1,704억 6천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부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⁴⁰⁾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주민참여예산운영’ 과 ‘민주시민교육강화’ 등 2건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안은 여전히 자체사업 수가 적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자체사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금번 성인지예산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안이한 예산편성과 사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34]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분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1개)			170,460,269	191,156,198	△20,695,929	△10.8%
1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094,824	1,215,800	△120,976	△10.0%

40)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분류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2	안전인프라구축	성별영향평가사업	3,357,038	1,581,390	1,775,648	112.3%
3	주민참여예산운영	자체선정사업	859,200	1,357,320	△498,120	△36.7%
4	학교혁신기획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	1,478,459	2,159,352	△680,893	△31.5%
5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교육부지정사업	2,772,693	3,124,300	△351,607	△11.3%
6	방과후학교사업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0,775,000	14,735,400	△3,960,400	△26.9%
7	초등돌봄교실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9,484,520	46,670,500	△7,185,980	△15.4%
8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고)	교육부지정사업	34,186	55,834	△21,648	△38.8%
9	인사관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59,769	3,251,605	1,308,164	40.2%
10	중등교원연수지원	교육부지정사업	2,978,639	3,363,211	△384,572	△11.4%
11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성별영향평가사업	9,130,700	10,334,400	△1,203,700	△11.6%
12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교육부지정사업	158,530	182,700	△24,170	△13.2%
13	민주시민교육강화	자체선정사업	382,860	76,070	306,790	403.3%
14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6,890	122,460	△65,570	△53.5%
15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50,341	603,147	△52,806	△8.8%
16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66,250	-	266,250	순증
17	학교안전망구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38,160	1,193,444	△855,284	△71.7%
18	맞춤식진로교육	교육부지정사업	1,646,190	1,782,680	△136,490	△7.7%
19	맞춤형취업기능강화	교육부지정사업	3,550,558	11,000,149	△7,449,591	△67.7%
20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85,810	256,820	△71,010	△27.6%
21	특성화고지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209,380	2,760,320	△550,940	△20.0%
22	청소년단체활동지원	교육부지정사업	201,600	910,800	△709,200	△77.9%
23	체육관리	교육부지정사업	1,225,920	4,769,440	△3,543,520	△74.3%
24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4,276,318	14,276,159	159	0.0%
25	특수교육과정지원	교육부지정사업	650,540	904,880	△254,340	△28.1%
2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성별영향평가사업	2,355,000	3,314,487	△959,487	△28.9%
27	화장실개선	교육부지정사업	61,825,825	56,865,782	4,960,043	8.7%
28	자격연수	교육부지정사업	1,109,463	1,180,059	△70,596	△6.0%
29	전문교육	교육부지정사업	1,196,363	1,376,556	△180,193	△13.1%
30	영어체험교육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042,776	1,054,366	△11,590	△1.1%
31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부지정사업	706,467	676,767	29,700	4.4%

○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예산서 수립에 있어 대상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성인지예산서의 ‘방과후학교사업지원’ 과 ‘교육과정담당 교원연수(고)’, ‘전문교육’ 등은 이미 수년간 사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성인지예산서 신규 작성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성별 수혜 분석 없이 성과목표가 작성되었습니다.

[표-35] ‘방과후학교사업지원’의 성별수혜분석 현황(성인지예산서 86-87쪽)

□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공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제고		공립초등학교 여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 분	2022년 실적	2023년 추정치	2024년 목표치
전 체	0%	0%	50%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0%	0%	50%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이는 예산이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함으로써 차별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성인지예산서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지표를 선정,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사업의 제반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선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금번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특성화고지원’의 성과지표를 ‘서울 고등학교 여학생 중 특성화고 재학 여학생 비율’로, 2023년 동 지표의 실적을 30%로 추정하고 2024년 목표치를 28%로 낮춰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여학생을 증가시키겠다는 동 사업의 사업목표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인바, 성인지예산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의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 실·국별 주요사업별 검토

1) 안전총괄담당관

가) 안전인프라구축-안전총괄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238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357,038	1,635,190	1,681,390	1,721,848	1,675,648	
교육안전위원회운영	6,300	8,980	좌동	△2,680	좌동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운영	1,500	3,000	좌동	△1,500	좌동	
안전체험관건립 및 운영 지원	1,536,500	24,000	좌동	1,512,500	좌동	◦ 신규사업(강서 안전체험관 개관)
유관기관과의협력 체계 구축	10,400	4,100	19,500	6,300	△9,100	
유치원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지원	30,000	100,000	100,000	△70,000	좌동	◦ '21~'23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재난관리자원비축 관리	179,754	-	좌동	179,754	좌동	
재난대응시스템구축 및 훈련	53,780	63,270	좌동	△9,490	좌동	
초등학교교통안전 지도 활성화	137,700	181,500	212,300	△43,800	△74,600	◦ 유관기관 협력 및 어린이교통안전사 업 감액
초등학생등하교안심 알림서비스운영지원	-	3,160	좌동	△3,160	좌동	◦ 사업 시행여부 미 확정
통학버스관리시스템운 영지원	22,000	22,000	좌동	-	좌동	
학교CCTV설치지원	1,230,000	1,200,000	좌동	30,000	좌동	◦ 지능형 CCTV 설 치 예산 증액
학교안전평가단운영	9,460	10,180	좌동	△720	좌동	
학교주변통학로안전강화	4,800	15,000	좌동	△10,200	좌동	◦ 교통안전점검비 감액
학교출입관리강화	134,844	-	좌동	134,844	좌동	

- “안전인프라구축”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안전체험관건립및운영지원”은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부

죽한 서남권에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27일 교육청, 서울시, 강서구 3개 기관이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강서 안전교육센터의 2024년 3월 개관에 따라 기관운영을 위한 분담액과 추가공사비 분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36] '안전체험관건립및운영지원' 예산 산출 내역

· 자치단체등이전			38,500	천원
- 시도교육청분담금	38,500,000원×1회	=	38,500	천원
· 전출금등			1,498,000	천원
- 강서안전체험관구축및운영(기관운영비)	398,000,000원×1회	=	398,000	천원
- 강서안전체험관구축및운영(추가공사비)	1,100,000,000원×1회	=	1,100,000	천원

- 동 사업의 “강서안전체험관구축및운영(기관운영비)”은 강서구에서 수립한 강서(서남권) 안전교육센터(가칭) 운영계획⁴¹⁾에 따라 인건비 8억 3천 6백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책정한 3억 5천 7백만원을 합한 11억 9천 3백만원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서구가 1:1:1로 분담하여 서울시교육청이 3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3자 협약서⁴²⁾에 따르면 운영주체는 강서구청으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운영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시설개선에 필요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강서구에서 책정한 기관운영비 11억 9천 3백만원 중 7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기관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운영주체인 강서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면 기관별 운영비를 상호 협의하에 조정·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⁴³⁾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41) 강서(서남권) 안전교육센터(가칭) 운영계획 송부 (강서구 안전관리과-11950, 2023.8.17.)

42)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 제3조(협약사항)

7.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안전교육센터 운영주체가 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운영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시설개선에 필요한 운영비를, 서울특별시는 민방위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분담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동 사업의 “강서안전체험관구축및운영(추가공사비)”은 건축분야와 전시설계분야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인건비 등 단가상승, 복개부 보강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33억원)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서구가 1:1:1로 분담하여 서울시교육청이 1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그러나 강서구청의 사업비 변경관련 예산편성 협조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추가사업비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어야 할 시설부대비(준공식), 자산취득비(사무용 기기 및 집기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 안에도 시설공사와 무관한 시설 운영방안 수립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7] 강서(서남권) 안전교육센터(가칭) 건립사업비 변경보고44)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계			3,295
시설비	건축분야	설계변경 사항 - 건축 · 녹색건축/BF/에너지효율 인증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등 - 전기: 태양광 설비관련 피뢰침 변경 등 - 통신·소방: 행정자가망 공사 등	1,029
		관급자재: 철근·레미콘 물량 추가 등	168
		물가변동 사항	421
	전시설계분야	설계, 물가변동 사항 - 건축공사 착수일정 지연 영향으로 전시분야 착수일정 변경	700
	각종 용역	운영방안 수립 용역 등	100
	토목 분야	최초 공사비용 부족분(복개공사 비용 등)	672
감리비	건축공사 감리비		71
사무관리비	각종 본인증에 따른 사후 수수료 지급 등		23
시설부대비	준공식		11
자산취득비	사무용 기기 및 집기 구매		100

43)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서」 제4조(상호협력) 각 기관은 위 협약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하며 본 협약서상 의견차가 있거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44) 「강서 안전교육센터(가칭) 사업비 변경 관련 2024년도 예산편성 협조요청」(강서구 안전관리과-10352, 2023.7.18.)

- 다음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중 “학교출입관리강화”는 교육현장이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표-38] '학교출입관리강화' 예산 산출 내역

· 운영비		134,324 천원
- 검토수당	40,000원×10명×2회 =	800 천원
- 시스템개선용역비	5,000,000원×1식 =	5,000 천원
- 시스템사용료	23,000원×1,397교×4개월 =	128,524 천원
· 업무추진비		52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10명×1회 =	200 천원
- 시스템개선사업추진경비	20,000원×8명×2회 =	320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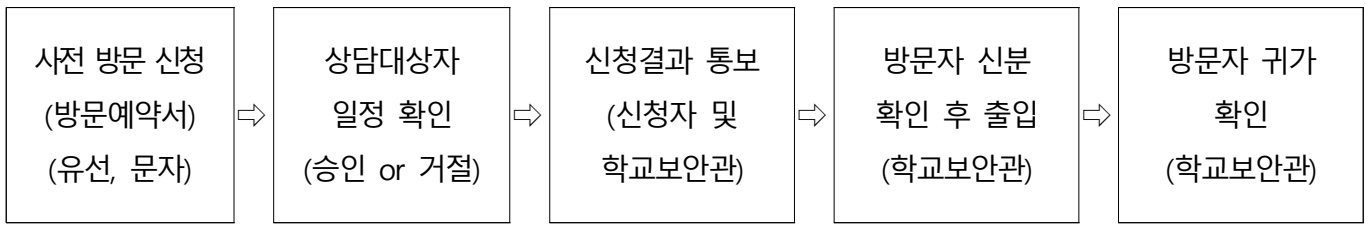
- 2009년 이후 학교 내 외부 출입자에 의한 전국 주요 사고가 12건 발생하였고, 그 중 6건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였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서울 방배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⁴⁵⁾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방안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도입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예약제를 학교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실패하였고,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육부 발표, 2023.8.23.)’ 중 「학교 출입 절차 강화」 세부과제와 연계하여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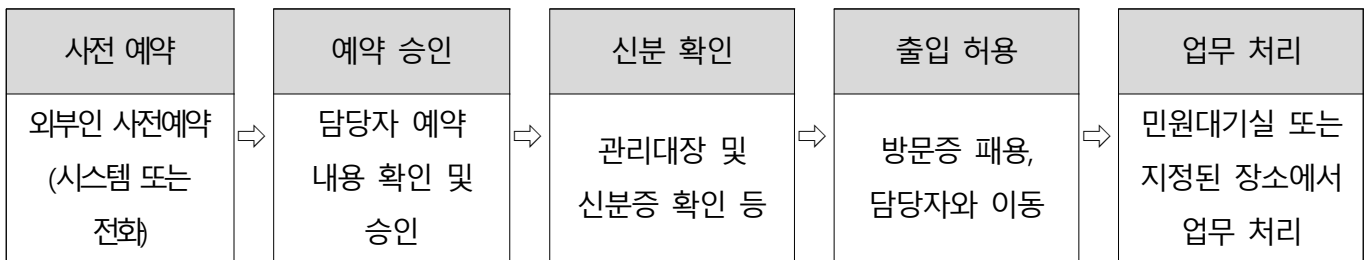
- 2023년 9월 학교 출입관리 강화 계획(안)⁴⁶⁾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2018년 유선, 문자,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사전에 방문을 예약했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카카오 채널)방식으로 구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5)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기획관 안전관리팀 보도자료, 2018. 7. 31.)
 46) 「학교 출입관리 강화 계획(안)」(안전총괄담당관, 2023.9.21.)

[표-39]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2018.9월)



[표-40]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2023.9월)



-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은 2018년에 실시했던 사업과 사전예약 방식이 카카오톡채널로 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이후의 절차는 대동소이하어 카카오톡 방식 변경으로 과연 얼마나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2018년에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가 실패한 이유는 당시 실시 근거 법령이 부재하여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이 전면 실시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하였고, 학교 방문자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사유였으나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식변경 이전에 먼저 경기도 교육청과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에 사전예약제를 담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교육청에서는 현재 2023년 9월 마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희망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카카오톡 채널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11월 22일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성과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삭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획조정실

가) 입학준비금지원-참여협력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467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7,314,660	40,532,636	39,798,756	△3,217,976	△2,484,096	
입학준비금	37,133,320	40,292,000	39,558,120	△3,158,680	△2,424,800	◦ 지원학생수 감소 (213,000명 → 195,000명)
입학준비금지원	181,340	240,636	좌동	△59,296	좌동	

- “입학준비금지원”은 관내 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1천 8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24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된 373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입학준비금지원’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천 9백만원이 감액된 1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입학준비금지원’ 예산 1억 8천 1백만원의 27.6%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미 동 사업은 2021년 첫 시행 이전부터 매년 교육청에서 각종 정책홍보나 각 학교로 하여금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었고,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를 통해서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안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입학준비금지원’ 중 운영지원비에 편성된 휴대폰 본인인증을 위한 문자발송비(15원*585,000회, 45원*585,000회)의 단위가 바뀌어 작성되었는바 교육청에서는 예산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최종 예산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1] 운영지원비 예산 편성 내역

- 운영지원비	(585,000원×15회)+ (585,000원×45회)+21,000,000원	=	56,100 천원
---------	---	---	-----------

나)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참여협력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455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79,830	17,920	144,420	161,910	35,410	
학교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 협력체계구축강화	4,680	7,240	좌동	△2,560	좌동	
학교협동조합민간협의회운영	2,500	3,400	좌동	△900	좌동	
학교협동조합설명회운영	3,450	5,780	좌동	△2,330	좌동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169,200	1,500	128,000	167,700	41,200	◦ 학교협동조합 설립학교시설개선 비 지원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지원”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및 학교협동조합 신규 설립교에 대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천 2백만원이 감액된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확대 및 성장을 위해 설치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와 학교협동조합 신규시설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1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센터의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센터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곧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본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 중단과 함께, 민간위탁 센터 운영의 부적절한 사업방식과 예산 낭비적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 한편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의2(48)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은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련 보고를 어떠한 공문도 도착하지 않았으며, 추후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서야 관련 보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민간위탁 추진사무에 대한 의회의 보고는 동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더욱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서울시교육청 2019)에서도 민간 위탁 관련해 추진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의회 동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47)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록 일부 발췌(2022.11.22.)

“~(생략) ○부위원장 고광민 학교가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의 상위기관을 만들고 또 상위기관의 연합회를 만들고, 그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계속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연합회는 저희 교육청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교육 사업 운영이라든지 또 정관을 만들고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분야의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근데요, 사회적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사무용품비, 운영수당, 원고료, 학교협동조합 사업 지원, 행사용품,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다 하시잖아요. 그거 다 하고, 그 대표자들 모아서 거기다 지원센터 위탁비를 또 줘요? 거기다가 또 학교협동조합 신규 시설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거 다 협동조합으로 나가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그러니까 협동조합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적 지원이라든지 협동조합 가치에 관한 교육 같은 강의라든지 또는 협동조합 간의 어떤 네트워크 연결, 홍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의 사업을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이하 중략)

○부위원장 고광민 사회적 가치를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경제학교 위탁을 주시는데 그 협동조합이 정확하게 성과도 없고, 협동조합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회 만들어서 다시 또 사업을 1억 2,600으로 위탁 받으시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이하 생략)”

48)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를 통해 민간 위탁 적정성 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동 위탁사업비는 교육위원회에 관련 보고 누락 및 위탁사업자의 적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전액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교원노사관리-노사협력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525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21,202	157,876	215,884	63,326	5,318	
교원노조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13,570	22,096	좌동	△8,526	좌동	◦ 각종 사업 추진비 삭감
교직단체지원	205,602	132,480	190,488	73,122	15,114	◦ 노조사무소 예산편성
서울교총과의교섭협의	2,030	3,300	좌동	△1,270	좌동	◦ 각종 사업 추진비 등 삭감

- “교원노사관리”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천 3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교직단체지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 사무소 임차료, 내부 공사비, 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천 3백만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에 편성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각 단체 및 조합의 운영 성격과 추진사업 간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2] 지방보조금 편성 내역

연번	단체 및 노조	추진사업	금액(천원)
1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20,000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어린이날 기념사업	20,000
3	서울교사노동조합	불어라 책바람(독서문화 조성)	20,000
4	대한민국교원조합서울지부	다문화가정 학생초청 서울역사안보체험	5,000
5	서울교육삼락회	인성실천 교육사업	5,000

-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그 지원대상 사업 범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49)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교원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과 내용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바, 이처럼 성격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원은 중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향후 교원단체의 보조금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지원 사업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의 인성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교특예산편성-예산담당관(사업별 설명자료 330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229,119	415,470	6,562,770	3,813,649	△2,333,651	
역량강화연수	51,620	98,190	좌동	△46,570	좌동	
예산편성업무지원	272,279	312,060	좌동	△39,781	좌동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5,220	5,220	좌동	-	좌동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3,900,000	-	6,147,300	3,900,000	△2,247,300	◦ 2023.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이판 전 부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 “교특예산편성” 중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 대비 22억 4천 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학교자치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사업명을 학교자율 사업운영제로 변경하고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자율/공동체/선택)하여 왔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3개 영역 중 자율영역과 공동체영역 및 선택영역 중 일부를 1) 학교기본운영비(학교통합교부운영비)에 포함시킨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과, 2)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예산안은 학교기본운영비(학교통합교부운영비)를 통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교부되는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에 대한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선택사업 자율운영 영역 사업목록’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

하는 것입니다.

[표-43] 2023학년도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영역별 운영 개요⁵⁰⁾

구분	사업 내용	지원방법	학교별 예산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전성시대 2.0, 협력적 책쓰기 교육,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의 영역 중 선택 ●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 운영 	학교통합 교부운영비 교부, 개별학교 본예산으로 편성	교당 8,000 ~ 19,000천원 (학교급별 차등)
공동체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학생자치영역 ● 학교학부모회 	학교통합 교부운영비 교부, 개별학교 본예산으로 편성	사업부서에서 별도 기본계획에 따라 안내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영어 희망교실 등 21개 사업 중 예산에 맞게 학교가 선택 	목적사업비 예정	

○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기준 21개의 ‘선택사업 자율운영 사업’ 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제시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학습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통일교육 실천동아리,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등 비교과 활동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선택영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 사업은 학교 기본운영비(통합교부운영비)에 편성된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대상과 달리 사립초, 국립중 등 수업료 자율화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50) 「2023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2.0」 기본운영계획(2023.1.,교육혁신과) 자료를 정리한 것임.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대상학교에 ‘교육과정 자율운영영역 사업’ 과 연계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동 사업은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사업운영의 결과 및 사업비 잔액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의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임을 감안할 때 집행부분의 상당액이 2월 이후에 처리될 수 있어 사업예산의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 이처럼 동 사업은 개별 학교에 예산의 재량권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한정된 교육재정을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배분이 아닌 일률적인 배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적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감액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4]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 사업목록(2023년 기준)

연번	선택사업명	사업개요
1	초등영어 희망교실	영어학습지원대상학생의 영어 학습동기 및 기초학력 향상
2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특수학교와 장애성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 내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반 마련 및 평생학습 욕구 충족
3	학습자가 운영하는 평생교실	학교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공
4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
5-1	세계시민교육 실천동아리	공동체적 의식 및 책임 의식으로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있는 학생 참여 동아리
5-2	통일교육 실천동아리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통일안보교육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참여 실천동아리
6	통합교육공동체 운영	학교 내 일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이 함께 교원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통합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7	영어 독서교육·표현교육 (말하기·쓰기 교육) 내실화	단위학교 영어 독서 및 표현(말하기·쓰기)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 함양

번호	선택사업명	사업개요
8	독서·인문교육과정 체계화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독서·인문 교육과정 운영(초 - 놀이 중심 독서교육, 중 - 협력적 책쓰기 교육, 고 - 삶과 만나는 인문학 교육)
	- 서울형 심층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프로그램	-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 활동
9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현안을 학교 내 교사들의 동료성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교과와 연계하여 실천하는 주제 중심 교과 융합 학습
10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제잔재 청산	교육공동체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현황 파악 및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하고 일제 잔재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
11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다양한 진로설계 역량 제고 중3, 학부모, 교사의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개선 다양한 진로로드맵 제공 및 직업세계의 변화 안내
12	중등 협력종합예술활동	재학 중 최소 한 개 학기 이상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 단위로 뮤지컬, 연극, 영화(고등학교 밴드)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 중심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13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 (텐덤사이클) 지원	텐덤사이클을 활용한 교육과정 내 장애·비장애 학생 간 어울림 통합 체육활동
14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협력학교 운영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지역의 협력기관과 함께 지역연계형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5	수학점핑학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체험·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과정 운영
16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학교	학교 및 학년 단위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생태전환교육 운영
17	생태전환 학급(동아리)활동운영	학급(동아리) 단위의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지속적인 기후행동 실천 활동 전개
18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목적: 학생 참여 중심의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및 학생 미래 역량 강화 내용: 학생 참여 중심의 AI 기반 융합 프로젝트 활동 실천 및 사례 나눔
19	제2외국어 동아리 및 학습지원	학생들의 제2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소통 역량 함양 제2외국어 학습 지원을 통한 포용과 공존의 세계시민 양성
20	학생봉사활동 연계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	목적: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한 사회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삶의 질 개선 지원 내용: 어르신(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키오스크 이용법,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을 개발하여 어르신과 학생 간 1:1 매칭 후, 학생이 보조강사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1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환경,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연계한 학생 대상 교육 활동

3) 교육정책국

가) 원격교육지원-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58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73,631,958	277,860	97,415,547	373,354,098	276,216,411	
디지털기반학생 맞춤형교수학습지원	-	-	322,180	-	△322,180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교 활용
디지털환경조성	373,631,958	-	96,815,507	373,631,958	276,816,451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	277,860	좌동	△277,860	좌동	

○ “원격교육지원”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2.)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에 맞추기 위하여 1인 1스마트기기 교육 환경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733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3,736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디지털환경조성”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923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2023년 1차 추경으로 289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중1학년 기기 부족분을 충당한 바 있으며, 2023년 2차 추경에서는 274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중2학년 충전함 잔여분과 고2학년과 교원의 기기와 충전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초3·4학년과 중1, 고1 학년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45] 연도별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종,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1	62,031,380	61,758,673	272,707	2022년 스마트기기, 충전함 등 구매
2022	35,382,750	0	35,382,750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2023	55,111,365	52,161,955	2,949,410	2023년 스마트기기 구매(9월 기준)

[표-46] “디지털환경조성” (운영비) 예산 산출 내역

운영비			14,174,392	천원
- 디지털튜터용역업체선정수당	(150,000원×7명)+250,000원	=	1,300	천원
- 디지털튜터용역운영비	1,392,000원×322교×3월	=	1,344,672	천원
- 디지털튜터원가계산의뢰	770,000원×1회	=	770	천원
- 스마트기기보급물품용역선정위원회수당	50,000원×10회×10명	=	5,000	천원
- 스마트기기보급물품용역선정위원회회의실임차료	300,000원×5회	=	1,500	천원
- 스마트기기양품화비	150,000원×74,701대	=	11,205,150	천원
- 스마트기기제안서평가위원수당	500,000원×10명×2회	=	10,000	천원
- 스마트기기조달수수료	1,600,000,000원×1식	=	1,600,000	천원
- 원가조사수수료	2,000,000원×3회	=	6,000	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환경조성” 사업 중 신규사업인 ‘스마트기기양품화비’ 로 11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스마트기기를 총 6년간 사용하고자 2022년도에 도입된 스마트기기를 양품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양품화된 스마트기기를 2025학년도 중1학생에게 재배부하여 2027학년도까지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 스마트기기 양품화의 범위는 배터리 교환, 외관 파손 교체 수리, 액정 보호필름 교환, 단말기 공장 초기화 작업, 불량 단말기 수리, 구성품액세서리 보충, 단말기 관리(MDM) 설치, 단말기 현장 배송 및 설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양품화 범위는 배터리 교환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스마트기기 보급 계약시 포함되어 있던 하자보수(유지보수51)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양품화를 위해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배터리 교체의 경우 배터리 상태에 따른 선택적 교체가 가능하고 제품별 교체비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급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8만원의 교체비용을 일괄 추계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양품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양품화는 보급 후 3년이 되는 2022년도 보급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학사일정을 고려한다면 2025년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인바,

동 사업은 건축재정의 여건에 따른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47] 시도교육청 스마트기기 양품화 비용

지역	양품화 대상 제품	양품화 대상 기기수(대)	양품화 비용 총액(원)
충북	LG Gpad3,Gpad4,Gpad5, 삼성 갤럭시탭A, 갤럭시탭 S6	4,851	500,673,000
울산	삼성 갤럭시탭 S7, 크롬북2,LG	18,062	787,978,700
부산	삼성 갤럭시탭 S5	19,714	969,926,930
경남	삼성전자 크롬북2 Lenovo, Asus	26,379	497,838,000
서울	삼성 갤럭시탭 S7 FE	44,718	11,205,150,000
	삼성 갤럭시시 크롬북2	21,196	
	아이패드 9세대	10,695	
	서피스고(SV7-00027, Microsoft)	14,110	
	네이버 웨일북(WELL, Lenoveo)	1,869	
	합계	92,588	

51) 「‘2023학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관련 기기 보급’에 관한 예정원가조사보고서」

- 설치용역 : 보호 필름 부착 및 레이저각인, 앱 및 콘텐츠 사전 설치 용역, 배포 및 현장 설치
- 유지보수 : 유상 CARE 서비스(파손)

- 이와는 별도로 태블릿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임을 고려하면 활용연수인 6년차에는 태블릿 업체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바 태블릿 구매시 이러한 약정도 미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스마트기기보급’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2.)⁵²⁾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은 2022년 당시 중1학년을 지급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초3·4학년과 중1, 고1학년을 지급대상으로 3,1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48] “디지털환경조성” (유형자산) 예산 산출 내역

유형자산		317,857,086	천원
- 스마트기기보급(고)	784,750원×155,723대 =	122,203,625	천원
- 스마트기기보급(중)	784,750원×69,540대 =	54,571,515	천원
- 스마트기기보급(초)	784,750원×152,056대 =	119,325,946	천원
-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고)	1,500,000원×5,881대 =	8,821,500	천원
-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중)	1,500,000원×2,862대 =	4,293,000	천원
-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초)	1,500,000원×5,761대 =	8,641,500	천원

- 그동안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기 수리비용 증가,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우려, 디벗을 이용한 유해사이트 접속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청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발간된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대한 한 연구⁵³⁾에 따르면 고등학생에 비해 초·중등학생의 과의존 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578, 2023.2.24.) “2025학년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음”

53)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기기 의존도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제16권 제1호(2022.6.)

있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저연령대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관련 과의존 대책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실시했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만 있을 뿐 정작 금번 예산이 편성된 ‘디벗’ 관련 과의존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고, 스마트기기를 보급받은 학년의 예방교육 참여 학생 수, 교육 만족도 결과를 학년별로 집계하지 않는 등 예방교육 성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과의존 대책으로 추진하였던 디벗 기기 이용시간 제어기능 개발은 현재 Android, Whale, Windows 기기에서만 이용시간 제어가 가능하고, iPadOS, Chrome 기기는 2024년 중반까지 이용시간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추진 중인 상태로 기기마다 일괄적인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과의존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⁵⁴⁾

-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학생들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정서 통제에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스마트기기에 대한 학생의 부주의도가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 만큼⁵⁵⁾ 초등학교 3~4년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는 물론 관련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3차)

55)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기기 의존도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제16권 제1호(2022.6.)

나) 정보화기획-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639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3,412,352	2,296,356	좌동	11,115,996	좌동	
소프트웨어	-	61,859	좌동	△61,859	좌동	
소프트웨어 (특별교부금)	-	22,437	좌동	△22,437	좌동	
원격업무환경구축	1,194,800	268,900	좌동	925,900	좌동	
정보화사업위원회운영	12,820	11,840	좌동	980	좌동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50,600	1,200	좌동	249,400	좌동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11,954,132	1,930,120	좌동	10,024,012	좌동	

○ “정보화기획”은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혁신 추진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11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4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기획” 사업 중 ‘학교정보화지원체계구축’은 각급 학교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교육체제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 밀착형 정보화 업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0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9억 5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49] ‘학교정보화지원체계구축’ (운영비) 예산 산출 내역

운영비		10,933,532 천원
- 업무자동화SW	80,000,000원×1식 =	80,000 천원
- 원가산정비	1,500,000원×2회 =	3,000 천원
- 전문인력양성강사수당	(100,000원+60,000원)×3일×20회 =	9,600 천원
- 전문인력양성교육	500,000원×60명×2회 =	60,000 천원
- 전문인력연수물품구입	2,000원×50명×20회 =	2,000 천원
- 제안서위원평가위원수당	(150,000원+50,000원)×8명×2회 =	3,200 천원

- 조달청수수료	11,000,000원×2회	=	22,000	천원
- 테크센터(지원청)운영비	200,000원×10월×11청	=	22,000	천원
- 테크센터공동근무지운영비	200,000원×10월	=	2,000	천원
- 테크센터방송장비지원단수당	(40,000원+10,000원)×20명×12회	=	12,000	천원
- 테크센터방송장비행사운영비	300,000원×3회	=	900	천원
- 테크센터역량강화워크샵장소대여비	2,000,000원×1회	=	2,000	천원
- 테크센터운영자재비	100,000원×100회	=	10,000	천원
- 테크센터집중진단기술용역(고)	1,450,000원×10월×400교	=	5,800,000	천원
- 학교네트워크통합유지관리용역	964,000원×12월×424교	=	4,904,832	천원

○ ‘학교정보화지원체계구축’ 사업 중 ‘학교네트워크통합유지관리용역’은 각급학교에 개별 추진되는 네트워크 유지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학교정보화지원체계(테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및 실효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공모과정(1~3차)을 거쳤으나 2023년 9월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표-50] 학교 네트워크 유지관리 사업 추진일정(안)

구분	추진내용	추진 일정	주무기관
네트워크 유지관리	통합 유지관리 사업 타당성 확보 (정책연구,설문)	2023. 5. ~ 7	본청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요 조사	2023. 8.	본청
	사업 범위 확정 및 사업 계획 수립	2023. 9. ~ 11	본청
	통합 유지관리 사업 수행	2024. 2. ~ 2025. 2	테크센터

○ 당초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연구소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동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각급학교 학제별, 종류별 수요조사를 거쳐, 노후 장비 교체 비용, 학교별 유지관리 방문 인력 출장비가 포함된 본 용역인 학교네트워크통합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 따라서 금번 사업예산에 포함된 학교네트워크통합유지관리용역비는 교육청의 타당성 용역과 사업 수요가 확정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초등교장자격연수, 중등교원연수지원-유·초·중등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675쪽, 772쪽, 865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유치원교원연수지원	258,200	257,520	좌동	680	좌동	
연수위탁교육	258,200	257,520	좌동	680	좌동	
초등교장자격연수	886,222	695,301	887,701	190,921	△1,479	
공사립초등교장 자격연수	886,222	695,301	887,701	190,921	△1,479	
중등교원연수지원	2,978,639	3,363,211	좌동	△384,572	좌동	
기간제교원1급(정) 교사자격연수	560,100	560,200	좌동	△100	좌동	
복수전공및부전공 과목자격연수	115,120	170,240	좌동	△55,120	좌동	
서울교육연구년제	38,390	76,550	좌동	△38,160	좌동	
전문직역량강화연수	25,220	21,500	좌동	3,720	좌동	
중등1급(정)교사 자격연수	329,909	334,721	좌동	△4,812	좌동	
중등교장자격연수	1,167,400	1,375,000	좌동	△207,600	좌동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연수	742,500	825,000	좌동	△82,500	좌동	

- “유치원교원연수지원” 과 “초등교장자격연수” , “중등교원연수지원” 사업은 각각 유치원 교원의 원장·특수·보건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와 공·사립 초등(특수)학교 교장 자격연수, 고등학교 교장·1급 정교사·부전공 과목 등의 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금번 예산안에는 “유치원교원연수지원” 2억 5천 8백만원, “초등교장자격연수” 8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어 2023년 본예산 대비 각각 70만원과 1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중등교원연수지원” 의 경우 29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지난 본예산 대비 3억 8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 중 ‘유·초·중등학교 교장 자격 취득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위탁교육’에 원장자격연수위탁비 2억 5천 8백만원과 ‘공사립초등교장자격연수’ 및 ‘중등교장자격연수’에 각각 8억 8천 6백만원, 11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초등교장자격연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연수경비 현실화와 연수의 질 제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⁵⁶⁾ ‘중등교장자격연수’는 2023년 본예산안에서 위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방식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억 7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⁵⁷⁾

[표-51] 최근 6회계연도 간 교장 연수 예산 중 위탁교육비 편성 현황

연도	유치원 원감 연수		초등교장자격연수		중등교장자격연수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2019	207,200	5,180천원×40명	543,900	5,180천원×105명	932,400	5,180천원×180명
2020	239,400	5,320천원×45명	543,900	5,180천원×105명	904,400	5,320천원×170명
2021	239,400	5,320천원×45명	558,600	5,320천원×105명	904,400	5,320천원×170명
2022	239,400	5,320천원×45명	691,600	5,320천원×130명	904,400	5,320천원×170명
2023	257,520	6,530천원×35명	691,600 (884,000)	5,320천원×130명 (6,800천원×130명)	1,360,000	8,000천원×170명
2024(예)	231,200	6,800천원×34명	884,000	6,800천원×130명	1,156,000	6,800천원×170명

주1. 해당 연도의 본예산에서 책정된 위탁연수비 총액과 산출기초를 의미함.

주2. 2023년 초등교장자격연수의 ()는 1차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액수이고, 2024년은 위탁교육비는 예산안 기준임.

- 그러나 2024년 연수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연수 예산이 7일 내외의 국외연수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사업 예산 산출 명세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교육연수원이 작성한 2023년 ‘초등교장자격연수’ 결과보고서의 예산

56)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85-87쪽.

57)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1009-1014쪽.

및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연수비용의 65.5%인 5억 7천 1백만원이 5박 7일 동안 덴마크·핀란드에서 진행된 국외연수경비였고,

2023년에 진행된 “유치원교원연수지원” 역시 5박 7일의 기간 동안 독일 해외교육체험 교장 연수 비용이 전체 예산액의 53.4%에 달하는 등⁵⁸⁾ 학교급과 관계없이 교장 자격연수 예산의 상당 부분이 1주 이내의 단기 국외연수로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중등교장자격연수’의 경우 ‘본연수’는 132시간으로 시도정책연수보다 2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수’ 소요비용보다 독일 체험 국외연수가 포함된 ‘시도정책연수⁵⁹⁾’의 소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래 표 참조).

[표-52] 2023년 초등 교장 자격연수 운용 소요 예산⁶⁰⁾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비고
운영비	교재, 배너, 현수막 등	11,735	- 교재, 현수막, 팸플릿, 배너 등
	강사비(원고료 포함)	70,821	- 멘토링연수 강사비 포함
	각종 위원, 보조강사 등 수당	18,908	- 회의 및 평가 수당, 연수 운영 보조강사 수당 등
	학습평가 운영(수당 포함)	5,976	- 논술형 평가 운영 관련 총액
	연수 재료 및 운영비(용역비 포함)	150,838	- 노트북 등 임차비 등
	국내 체험연수비	19,750	- 기업 방문을 위한 임차비, 강사료, 운영비 등
	멘토링 연수 운영비	9,496	- 멘토링 연수를 위한 운영비, 중식비, 간식비 등
	국외 체험연수비	571,100	- 덴마크, 핀란드 5박 7일 국외 연수 경비
연수생 중식비	12,810	- 집합연수 시 연수생 중식비	
업무추진비	연수운영협의회비	900	
합 계		872,334	

58) 2023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본연수 중 진행된 해외교육체험연수는 5박 7일(40시간) 간 독일의 유치원과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이 중 해외 현장체험 연수비는 1억 3,741만여 원이었음.

(자료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2023.6.), 2023년 서울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운영 안내, 35쪽;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2023.11.), 2023년 서울시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결과보고서, 37쪽.)

59) 2023년 중등 교장 자격연수 중 본연수는 위탁기관(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에서 22일(13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시도정책연수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11일(66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교육연수원이 진행한 시도정책연수는 5박 7일간 독일의 김나지움(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국외체험연수가 포함되어 진행되었음.

(자료 :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2023), 2023 중등 교장 자격연수(시도정책과정) 운영 계획(송부용))

60) 천원 단위는 반올림하여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2023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 운영 결과 보고서」, 51쪽.)

[표-53] 2023년 중등 교장 자격연수 운영 소요 예산(안)⁶¹⁾

구분	산출내역		연수시간	금액(천원)
운영비	예정원가계산용역비			2,000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수당	100천원×10명×3회		3,000
	자격연수위탁교육비	국가정책연수 : 100천원×170명	2일(12시간)	17,000
		시도정책연수 : 4,900천원×170명	66시간 (11일)	833,000
		본연수 : 3,000천원×170명	132시간 (22일 이상)	510,000
	사무용품비	200천원×5회		1,000
	기관평가위원회 수당	60천원×10명×3회		1,800
	연수운영방식개선 수당	60천원×10명×10회		6,000
업무추진비	협의회비	60천원×10명×6회		1,200
합 계				1,375,000

[표-54] 2023년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연수대상자 1인당 소요 예산(안)⁶²⁾

구분	연수내용	연수기간	시간	예산(천원)
국가정책연수	국가정책연수	2일	12시간	60
시도정책연수	시도정책연수	5일	30시간	450
본연수	집합연수	20일	106시간	6,200
	해외교육체험연수	6일	40시간	
	멘토링연수	4일	24시간	
합 계		37일	212시간	6,710

○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⁶³⁾ 따라 25일, 180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5박 7일에 불과한 국외연수가 전체 경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 사업

61) 계획서 상 소요예산안에 연수과정별 이수시간을 추가하였음.

자료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3.1.), 「2023 중등 교장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

62) 연수대상자 1인당 금액 기준임.

자료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23.4.), 「2023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운영 기본 계획」, 16쪽.

6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및 원감	교장 및 원장
기간	15일 이상	25일 이상
이수시간	9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외유성 사업비 편성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국외 일정이 동 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꼭 필요한 적정한 연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감액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결손 등에 따른 긴축 재정 운용과 경직성 경비가 높은 재정적 특성을 강조하며 차년도 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외유성 사업비로 비쳐지는 국외 체험 연수를 전제로 연수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국외연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여비를 감액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유아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716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4,975,730	13,939,200	좌동	1,036,530	좌동	
학급운영비	14,975,730	13,939,200	좌동	1,036,530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인상 ◦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사업은 원비 인상 제한 및 학령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49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학급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운영비 지원 단가가 학급당 월 3만원 인상되고,⁶⁴⁾ 차세대 유아 나이스(NEIS) 시범 운영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예산 6억 6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 현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2021년 이전까지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유치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직원 인건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더욱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지난 몇 년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과 학령인구 감소·원비 인상률 제한에 따른 경영난 해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4) 월 48만원('23년도 예산) → 월 51만원('24년도 예산안)

[표-55]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집행기준(2020, 2021년 비교)

2020년			2021년			
관	항	목	관	항	목	
일반 교육 활동비	일반교육 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인건비	교원인건비 직원인건비	1. 급여	
		2. 행사비			2. 수당	
		3. 장학금			3. 복리후생비	
		4. 복리비			4. 법정부담금	
		5. 일반급식비·간식비			5.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그 밖의 인건비			
		2. 방과후특성화비	일반 교육 활동비	일반교육 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2. 교재·교구구입비	
		2. 통학버스이용비			3. 행사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4. 장학금	
		4. 졸업앨범비			5. 복리비	
		5. 수익자부담재원 교육활동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선택적 교육 활동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돌봄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2. 방과후특성화비			2. 통학버스이용비
		그 밖의 교육활동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4. 졸업앨범비			4. 졸업앨범비			
5. 수익자부담재원 교육활동비			5. 수익자부담재원 교육활동비			

자료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20, 2021), 「2020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2021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중 「[붙임 1] 학급운영비·교재교구비 집행 세출예산 과목」를 정리한 것임.

주: 변동사항은 적색으로 별도 표시함.

[표-56]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학급당 단가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급운영비	150,000	150,000	200,000	300,000	480,000
(교재교구비)	(50,000)	(50,000)	(50,000)	→ 480,000*	

자료 : 최근 4년간(2019~2023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을 정리한 것임.

* 학급당 단가는 교육청이 제시한 지원조건(원비 인상률 상한 준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사용)을 충족한 유치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학급운영비를 의미함.

** 교재교구비는 2022년부터 학급운영비와 통합되었고, 2022년은 추경예산을 통해 학급운영비가 18만원 증액됨.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학급운영비의 집행 용도를 인건비 까지 확대하여 간접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4년 신규사업으로 유치원의 규모나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 사업에 일부 유치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57]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중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관련 산출기초

· 학교회계전출금	14975,730	천원
- 학급운영비	(510,000원×2,348학급×12월) +(13,466,000원×45개원)	= 14,975,730 천원

- 더욱이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연계되어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⁶⁵⁾ 따르면, 2023년 관내 어린이집 4,712개소 중 원아 정원이 2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1,831개소 (38.9%)이고,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전체의 65.1%인 3,069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 어린이집은 동 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 유치원에⁶⁶⁾ 해당하느바,

2025년 유보통합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유치원 전환이 가속화되면 동 사업은 지원대상 유치원 증가에 따라 예산 투입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6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현황(행정구역별)_2008년 이후”, 2023.5.30. 자료 갱신,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CA0109Y&conn_path=I2 (검색일 2023.11.10.)
 66) 「2023~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배치계획」(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따르면, 유아배치지표(학급당 유아 수)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 연령대별로 14명에서 22명 이하수준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20~28명 이하 수준임(2023학년도 기준,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따라서 동 사업계획(안)이 소규모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기준에 따라 볼 때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40~56명 사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023~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배치지표

구 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연령
공립	2023학년도	14명 이하	20명 이하	22명 이하	20명 이하
	2024학년도	"	18명 이하	20명 이하	18명 이하
	2025학년도	"	"	"	"
사립	2023~2024학년도	16~20명 이하	22~24명 이하	24~28명 이하	22~24명 이하
	2025학년도	14~18명 이하	18~20명 이하	20~24명 이하	18~20명 이하

(자료 :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2023~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배치계획, 2쪽)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8] 정원 규모별 서울시 내 어린이집 현황(2022년 기준)

(단위: 개소)

계	20명 이하	21~ 39명	40~ 49명	50~ 80명	81~ 99명	100~ 160명	161~ 200명	201~ 240명	241~ 300명	300명 초과
4,712	1,831	700	538	898	442	238	43	12	10	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시행 예정 시기인 2025년 이후 유보통합 상황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여부를 재검토”⁶⁷⁾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만약 유보통합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예산은 삭감하고 유보통합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에 사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717쪽.

마) 유아교육교육력제고-유아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733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14,590	3,021,260	좌동	△1,806,670	좌동	
미래교육지원단 운영지원	22,590	22,700	좌동	△110	좌동	
유치원수업지원	1,040,000	2,990,000	좌동	△1,950,000	좌동	◦ 지원대상 축소
유치원원격수업운영 지원	-	8,560	좌동	△8,560	좌동	
테마형유치원지정 사업운영	152,000	-	좌동	152,000	좌동	

-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표 유예대상 공립유치원의 시간강사비 지원 및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한 미래 교육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억 7백만원이 감액된 12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테마형유치원 지정사업운영’ 은 개별유치원이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당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교육활동 운영, 교사 배치 및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 1억 5천 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2023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유아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고, 아토피 치유와 소규모 공동교육, 놀이 교육 등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표-59]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테마형 유치원 관련 사항⁶⁸⁾

IV. 주요 추진과제	
6	유아 사교육 대응
<input type="checkbox"/> 유아 공교육 강화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 지정·운영(‘24.~) 	
* (사례 : 세종 솔빛숲유치원) 세종시 괴화산에서 매일형 숲교육 실시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친화중점 유치원 등 각 목적사업과 중복되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안)⁶⁹⁾을 보면 이미 ‘자연친화중점 유치원’ 과 ‘부모행복교실 중심유치원’ 선정·지원 등 중점유치원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60] 유치원 특색사업(돌봄, 놀이 활동 등)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세세세부사업)	2024년 예산안 편성액	주요 내용(‘24년 예산안 기준)	2023년 운영 현황
서울유아교육 지원계획수립 (자연친화교육 활성화지원)	110,260	○ 자연친화중점유치원 운영 - 유치원과 지역사회, 환경 여건을 고려한 생태 전환 중심의 자연친화교육 활성화 지원 - 원당 1천만원 지원	11개원 운영
지역유아교육협력 (부모행복교실)	67,830	○ 부모행복교실 중심유치원 운영 - 중심유치원(11개원)을 활용한 부모행복 교실(놀이워크숍) 운영, 원당 6백만원 지원	11개원 운영
지역유아교육협력 (지역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운영)	145,200	○ 교육지원청별 중심유치원 운영 - 교육지원청별 중심유치원(11개원)을 운영으로 지역 내 유치원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원청당 13,000천원 지원	지역청별 협력네트워크 운영 (11개)

68) 교육부 사교육대책팀(2023.6.), 「사교육 경감대책」, 17쪽.

69)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23), 「신규사업 추진 계획서(테마형 유치원 지정 사업)」 ‘숲·생태 체험과 공동교육 운영’

세세부사업 (세세세부사업)	2024년 예산안 편성액	주요 내용('24년 예산안 기준)	2023년 운영 현황
에듀케어운영확대 (유치원온종일 돌봄교실운영)	210,920	○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 온종일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 유아 지원 등을 수행, 원당 3,500만원 지원	13개원 운영

- 한편,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본래 “기관의 운영철학과 실정, 학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운영” 되어야⁷⁰⁾ 하고, 테마형 유치원이 추구하고 있는 놀이·유아 중심 교육과정이나 자연에 대한 탐구 등은 이미 2019 개정 누리과정을⁷¹⁾ 통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테마형 유치원이 추구하고 있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형태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나 동 사업인 테마형유치원은 현재까지 사업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한 상황인 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동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진 후 필요성이 검증된 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0)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2023.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5쪽.

71)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19년 7월 고시되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교육부 고시 재2019-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2호 관련)

바) 생태체험교육-초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812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52,320	32,917	811,517	719,403	△59,197	
농촌유학	730,420	10,617	759,217	719,803	△28,797	
생태체험교육교류 사업운영	21,900	22,300	52,300	△400	△30,400	

○ “생태체험교육”은 기후위기, 환경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학생의 장기 농촌 체험활동과 서울-농·산·어촌 학교 간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7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에 최대 1년간 학업 및 농촌 체험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촌 유학’ 사업과 서울 희망학교와 농촌학교 간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생태체험교육교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 ‘농촌유학’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총인원 483명의 학생이 전라남·북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학교에서⁷²⁾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는바,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업 효과성과 단일 사업 중심의 기금 운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받아 2023년 추경예산에서는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왔습니다.

72) 강원도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농촌유학을 진행했고, 전라북도는 1년 단위 모집으로 2학기에 신규 모집분이 없음. 참여 학생 수는 1학과 2학기에 모두 참여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된 수치임.

[표-61] 2023학년도 농촌유학 참여 현황⁷³⁾

(단위: 명)

학기	구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소계
1학기	가족체류형	14	39	28	43	40	30	2	6	1	203
	유학센터형				8	9	5	2	1		25
	홈스테이형					1	2	1	3		7
	합계	14	39	28	51	50	37	5	10	1	235
2학기	가족체류형	24	51	27	36	42	21	3	5	2	211
	유학센터형		1	1	12	7	5	1	1		28
	홈스테이형				1	2	1	2	3		9
	합계	24	52	28	49	51	27	6	9	2	248

- 이러한 ‘농촌유학’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고 비예산 사업 중심의 도농교육교류협력사업을 탐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의 소통을 전제로 2023년 추경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⁷⁴⁾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업지역을 당초 전라남·북도에서 강원도까지 확대한 것에 더해,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및 방법 등의 개선 없이 기존사업을 유지한 채 금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기후변화환경교육” 예산은⁷⁵⁾ 환경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과 환경교육 관련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7백만원이

73)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3.11.), 「2023 생태전환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운영 실적」, 8쪽.

7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동 사안(농촌유학)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 질의에 교육혁신과장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와 함께 “위원 요청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교육정책 국장은 예산 편성의 당위성이나 사업계획 보완 등에 있어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3.31.), 제319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6.22.) 회의록 등을 참조.

75)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05-811쪽.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촌유학’에 편성된 예산인 7억 3천만원보다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규모로만 봤을 때 300명 내외의 농촌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서울시 내 전체 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예산보다 큰 것으로, 서울시 학생 전체를 위한 환경교육 재원을 일부 학생에게 집중하여 사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22.6.11. 시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교육 예산에 대한 수요도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⁷⁶⁾, 기후변화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한정된 인원만이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사업비 삭감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농촌유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 등의 만족도가 높고,⁷⁷⁾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 추진 의지나 지속 추진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⁷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감액 범위나 사업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7) 전라북도교육청이 2023년 8월 10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의 84.2%, 참여 학부모의 94.2%, 농촌유학생 전입학교 재학생의 75%가 농촌유학에 대해 만족(5점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숫자를 합산한 값)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보도자료(2023.10.16.),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는 ‘전북농촌유학’ 정책효과 높다)

78)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2023.10.17.)에서 유기홍 의원은 농촌 유학의 높은 만족도와 농촌 및 생태체험 기회 확대, 농촌소멸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동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주문했고,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자료 : 뉴스1(2023.10.17.), ‘농촌유학 중단은 안 된다’ 당부에 전북·전남 교육감 “계속할 것”,

<https://www.news1.kr/articles/5201983> [검색일 2023-11-12])

사)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초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855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97,300	636,070	좌동	61,230	좌동	
생각을키우는교실운영	156,870	206,000	좌동	△49,130	좌동	
서울가나다, 서울구구단,서울ABC	-	414,210	좌동	△414,210	좌동	◦기 개발자료 활용 안내(비예산)
초등수업연구실천 교사제	488,840	-	좌동	488,840	좌동	
협력적평가방법개선 지원	51,590	15,860	좌동	35,730	좌동	◦신규사업(학생평가 연구학교) 운영

-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평가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서논술형 평가 강화를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6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예산의 증액은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와 ‘협력적평가방법 개선지원’ 사업에 따른 학생평가 연구학교 운영이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 이 중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초등 수업 연구 실천 교사를 지정하여 교수·학습 연구비용을 지원하고, 실천 교사 간 네트워크 및 실천 교사 지원을 위한 전문가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 신규로 총 4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는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추진 중인 “교원역량성장지원”에 편성된 수업 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등과 사업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예산 산출에 있어 지

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사업 계획 전반의 타당성과 적정성 면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 “교원역량성장지원”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 참여, 질문과 탐구, 사고력 확장을 강조하는 「생각을 쓰는 교실」의 현장 안착 등을 통해 수업과 평가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업 평가나눔 교사단은 수업 공개(나눔)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 간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와 수업 평가나눔 교사단은 사업대상 학교급이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 교원 연수나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62] ‘초등연구실천교사제(‘24년 신규)’ 및 ‘수업·평가나눔교사단’ 간 비교⁷⁹⁾

구분	초등연구실천교사제 (초등교육과, '24년 신규)	수업·평가나눔교사단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23년)
사업대상	• 초등학교 교원	• 중·고등학교 교원
구성	• 지원청별 20명 내외(총 220명)	• 지원청별 1개단 운영(학교간 10명 내외의 교원으로 구성된 다수의 교과별·주제별 분임으로 구성)
주요내용	• 교사 1인당 1,500천원 지원 •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개선 실천(학습자 참여형 수업, 서논술형평가 확산 및 연간 4회 이상 교내 수업 나눔 등)	• 분임별 1,000~2,000천원 내외 연구비 지원 •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평가 설계 등 공동연구, 분임 공동연구활동 공유 등
소요예산	• 488,840천원	• 381,740천원

79) 초등연구실천교사제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제출한 「2024학년도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 운영 계획(안)」을,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은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3.2.)의 「2023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구성 및 운영 안내(교육지원청용)」을 정리한 것이며, 소요예산은 2024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그런데 2023년 기준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이 분임 당 1~2백만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가 1명의 교원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교원당 지원 단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는 2024년 예산안에서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1개 팀당 지원액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수준이고,⁸⁰⁾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에 지원하는 학교당 예산이 3백만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음을⁸¹⁾ 고려할 때도 과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지원청별 20명 수준에 불과한 수업연구실천교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문가단과의 상시 연구를 위한 연구 조직(실천교원연결망)을 구성하고, 실천 교사의 연수 운영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실천 교사가 아닌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하나의 수업평가나눔교사단이 10명 내외의 분임 10개 내외로 구성되고 있지만, 동 사업은 지원청당 20명 수준의 교사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63] 2023년 중등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구성 및 운영 현황('23.9.30. 기준)⁸²⁾

(단위: 팀, 명)

청	본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합계
분임	100	18	11	14	16	13	13	11	13	18	17	12	256
인원	384	151	114	142	190	97	169	101	155	127	200	144	1974

- 따라서 동 사업은 초등교사 220명의 수업·평가 개선 실천을 위해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사업비 삭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0) 사업별 설명자료 641-657쪽.
 81) 사업별 설명자료 1890-1893쪽.
 82) 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2023), 2023년 중등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구성 및 운영 현황('23.9.30. 기준)

아)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중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882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206,800	917,700	좌동	289,100	좌동	
사립학교교사신규 채용지원	1,206,800	917,700	좌동	289,100	좌동	◦대상 학교 수 증가

○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지원”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신규교사 채용 시험을 위탁하는 법인과 학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12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을 위탁하는 사립학교가 증가하였고, 전형 단계별 지원액이 조정됨에 따라 금번 예산이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64] 2023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 학교운영비 지원 내역⁸³⁾

(단위: 개교, 천원)

구분	학교수	기준액	소계	비고
기본지원*	17	2,000	34,000	
최종합격자 선발 추가지원**	69	7,000	483,000	2,000+5,000천원
교육청 추천 평가위원 구성 지원***	3	7,000	21,000	2,000+5,000천원
최종합격자 선발+교육청 추천 평가위원	7	12,000	84,000	2,000+10,000천원
계	96	-	622,000	

* 1차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선발에 참여한 학교

** 2023학년도 신규교사 위탁채용 최종합격자를 100% 선발한 학교

*** 학교가 자체 전형(2차) 시 평가위원의 1/3 이상을 교육청 추천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채용은 2021년 9월 24일 개정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에⁸⁴⁾ 따라 시도교육감

83) 「2023학년도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안)」(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23.4.)을 참고하여 작성함.

의 승인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채용 시험의 1차 필기시험이 교육감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동 사업에 따른 재정지원과 무관하게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 수요가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바,

1차 시험을 의무 위탁하는 모든 학교에까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현행 사업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자체 시행하는 2차 전형에서 교육청이 추천한 평가 위원이 전체 평가 위원의 1/3 이상을 구성함으로써 사립학교 채용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차 전형에 교육청 추천위원이 참여할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개선안으로 신규교원 채용학교 지원대상을⁸⁵⁾ 동일하게 하되, 1차 전형 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을 줄이고, 2차 시험의 면접위원 참여비율 등을 모두 준수한 학교에 교원 채용과목(1~7과목)별로 교당 최소 4백만원에서 최대 8백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84)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85) 사전협의 신청 기준 1차 필기시험 위탁 신청한 법인 및 학교 중 2차 전형(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위원을 외부위원 1/3 이상 구성한 법인 및 학교

[표-65] 2023, 2024년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 기준

2023년			2024년 (예정)		
구분	지원기준	교당 지원금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 (단위 : 천원)	
기본 지원	1차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선발에 참여한 학교	2,000	기본 지원	1차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선발에 참여한 학교 (사전협의 및 정현원관리지원비)	1,000
추가 지원	2차 전형 참여 학교 (2차 자체 전형 시 평가위원의 1/3 이상을 교육청 추천위원 신청 학교)	5,000		2차 전형	1과목
	2023학년도 신규교사 위탁채용 최종합격자 100% 선발 학교	5,000	2과목		5,000
			3과목		5,500
			4과목		6,500
			5과목		7,000
			6과목		8,000
			7과목 이상		8,500

자료 : 「2023학년도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안)」(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23.4.), 2쪽과 「2024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재정 지원 계획(안)」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⁸⁶⁾ 1차 필기시험에 대한 의무 위탁 규정 등 채용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나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질지도 불분명합니다.

- 오히려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에 있어 교육청이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86)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권자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규정하되,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해 이사회가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7조에 의해 「민법」 제61조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받음.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⁸⁷⁾ 제도 운용 전반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수업료 자율학교 등 1차 필기시험 의무 위탁 대상이 아닌 학교를 대상으로⁸⁸⁾ 사업대상을 한정하거나,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상에 기재된 산출기초가 일치하지 않는바,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의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87) 교직원 채용에 따른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는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2022년 9월, 사립학교 법인은 공동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학 자율성 침해'를 규탄한 바 있음.

(자료 : 조선일보(2022.7.22.일자), 사립학교 법인들, 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이어 가처분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5414?sid=102> (검색일 2023-11-13)

88)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자) 인사관리-유·초·중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885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559,769	3,237,563	3,251,605	1,322,206	1,308,164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	50,970	59,360	좌동	△8,390	좌동	
교권보호	2,638,571	1,210,968	좌동	1,427,603	좌동	
교사전보	262,226	360,846	좌동	△98,620	좌동	
교원복지	210,000	210,000	좌동	-	좌동	
교원성과상여금	220	440	좌동	△220	좌동	
교원자격관리	12,100	2,100	좌동	10,000	좌동	
사립교원인사관리	41,610	36,964	좌동	4,646	좌동	
유초인사관리	139,951	145,560	좌동	△5,609	좌동	
중등교사전보(고)	12,032	21,555	23,955	△9,523	△11,923	
중등인사관리	1,192,089	1,189,770	1,201,412	2,319	△9,323	

○ “인사관리” 는 교원의 자격관리와 성과상여금, 교원복지 및 교권보호 대책, 교권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45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권보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 이 중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 는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의 인사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8백만원이 감액된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교권보호’ 사업은 교원안심보험(공제)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 등을 위해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6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의 세부 산출기초가 실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맞지 않고, ‘교권보호’ 사업에 편성된 교원안심보험(공제) 등의 예산 역시 객관적 분석 없이 추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먼저, ‘각종위원회운영및관리’에 편성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현재 참석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당연직 위원 4명과⁸⁹⁾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⁹⁰⁾ 참석 수당은 4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1~2023.10.) 회의가 연중 2~4번 개최되었으나⁹¹⁾ 참석 수당은 10회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등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업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로 구분되어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일 항목(산출기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⁹²⁾

객관적이지 않은 추계나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나 운영 현황 등에 기반하여 예산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감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교권보호’에서 편성된 교원안심보험(공제) 예산은 교원안심공제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2023년 본예산 대비 4배의 증액이 이뤄졌고, ‘교권보호’ 예산 증액분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의 근거와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89) 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의미함.

90)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1.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행정관리담당관)

91)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4-1.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행정관리담당관)

92)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1.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행정관리담당관)

○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업 예산 증액에 있어 교원안심보험(공제) 단가를 책정한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책임보험 단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양자 간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책임보험은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사건까지 사건 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⁹³⁾

교원안심보험은 배상책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치료비와 상담비, 분쟁조정 서비스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추가적으로 소송 전 소송비 선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수행 전반에 있어 일부 과실 시에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두 보험이 보장범위와 한도,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책임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동 사업예산이 적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표-66] 지방공무원책임보험('23년)과 교원안심보험('24년 계획)과의 보장범위 비교⁹⁴⁾

기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교원안심보험
보장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이 수행 공무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경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1인당 연 3회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24) 교원의 교육활동 전체
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천만원 한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은 미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 교원 1인당 심급별 550만원 한도 검·경찰 조사 시 변호인 선임료 지원 (1심 소송비 지원에 포함, 최대 200만원) → (‘24) 교원의 일부 과실 시에도
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당 3천만원 한도(유죄 시 미보장) ✓ 기소 전 방어비용 1천만원 	

93) 서울시교육청(2023.2.), 「'23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운영 안내」

94)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은 「'23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운영 안내」(서울시교육청, 2023.2.)를 정리한 것이고, 교원안심보험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누리집(<https://www.ssia.or.kr/teacher/page1.php>)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2023.9.) 자료를 정리한 것임.

기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교원안심보험
	✓ 기소 후 소송비용 1심 1천만원, 2·3심 각 5백만원	일정 부분 소송비를 지원하고, 소송비용은 소송 전 선지원
기타 보장	•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사안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해, 심리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는 1년 중 15회 이내, 상해치료는 실비 지원 • 교원 위협 대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고 당 최대 20일 이내 경호

- 여기에 더해 2024년 예산안에서 책정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단가가 8,500원이고,⁹⁵⁾ 2023년 예산에서 책정된 교원안심보험의 단가가 2,5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⁹⁶⁾ 공제대상자 1인당 단가가 10,000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근거가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예산을 시급성과 중요성만을 이유로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우선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한 뒤 정확한 산출 근거와 보장범위가 설정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 사업별 설명자료, 208쪽.

96)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1031쪽.

차)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사업별 설명자료 1042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779,035	4,575,055	좌동	△796,020	좌동	
독서토론논술활성화 지원	119,035	179,055	좌동	△60,020	좌동	
서울형독서토론수업 운영	3,140,000	4,396,000	좌동	△1,256,000	좌동	
서울형심층쟁점독서 토론프로그램운영	520,000	-	좌동	520,000	좌동	◦ 신규사업

-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독서·토론교육자문관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연계 독서·토론 교육 교재 및 모델개발,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 운영 등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된 37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서울형심층쟁점독서토론프로그램운영’은 고등학생과 박사수료 이상 전공자가 함께하는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위한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리더단의 구성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5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박사 연구자가 참여한다는 점 이외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독서토론수업’과 차별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두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독서토론수업’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학년이나 학급 단위에서 독서·토론 활동과 연계한 교과 수업이 이뤄지도록 학교별 운영비 지원, 독서교육교사단 운영, 실천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나 창체, 교과 활동 안에서 박사 연구자의 지도나 조력 하에 독서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과 사업 취지와 목적에 있어 유사성이 높습니다.

[표-67] '23년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과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비교⁹⁷⁾

구분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 운영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참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 중, 고등학교(1,255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94개교, 229팀)
운영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 학년 또는 학급 단위(교과 내, 교과 간 융합) 중등 : 수업 팀 단위(동학년 동교과, 동학년 교과융합 수업 학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동아리 수업팀, 교과(단일/융합) 수업팀 등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와 연계한 협력적 독서토론 활동(책 읽기, 토론하기 및 쓰기) 및 학생 주도 탐구 활동(카드뉴스나 글, 전시물 제작, 자료 조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전에 선정한 주제 도서를 바탕으로 박사 연구자와 함께하는 한 권 깊게 읽기·토론하기·쓰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안 및 운영
단위 학교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 3,500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산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독서토론(3종) 예산, 학교자율 사업 운영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자치구 사업 등과 연계 운영도 가능</u> - '23년의 경우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에도 편성* * 3,000천원 내외 편성 권장

○ 또한, 동 사업에 관한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사업계획에⁹⁸⁾ 따르면, 개별 학교가 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독서·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고, 예산 역시 학교 자체 예산과 함께 다른 유사 사업

97) 「2023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 운영 계획」 및 「2023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본 계획」, 「2023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 계획(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23.2.)」을 정리한 것임.

98)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23.2.)가 제출한 「2023 서울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본 계획」에 의해 작성한 것임.

의 예산과 함께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동 사업은 ‘서울형 독서토론수업운영’ 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서울형 독서토론수업운영’ 의 일환으로서 예산이 편성·운영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금번 예산안에서 동 사업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프로그램운영비는 ‘서울형 독서토론수업’ 학교별 지원액의 80% 수준인 교당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해당 항목의 예산은 2023년 예산에서 학교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이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기보다는 올해와 같이 학교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사업별 설명자료 1047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902,800	-	1,020,900	3,902,800	2,881,900	
한국형바칼로레아 (KB)기반조성	3,902,800	-	1,020,900	3,902,800	2,881,900	

-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연구 및 시범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본예산에는 2023년 최종예산 대비 28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39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의 증액 사유는 사업 기간이 연중으로 확대되었고,⁹⁹⁾ 2023년 지정한 탐색학교 등이 IB 교육과정 인증체제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¹⁰⁰⁾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사업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연구추진단과 관심·후보학교 운영 등을 급격히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과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동 사업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교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¹⁰¹⁾ IB 교육과정과 개념 또는 내용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유사 사업이 다수 기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¹⁰²⁾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나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

99) 동 사업예산은 2023년 4월 10일에 의결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음.

100) 단위학교가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로부터 IB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크게 관심학교, 후보학교, IB 월드스쿨이라는 3단계를 거치고, IB 월드스쿨은 5년마다 IBO의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음. (자료 : 전북 교육정책연구소(2023.1.), 「IB,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교육동향 2023 1호)

101)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2.11.2., 2022.11.14.), 제31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2023.2.27.) 등 참조

102)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2023.4.18.) 참조.

정입니다.

- 더욱이 동 사업은 사업 성과 등의 명확한 제시 없이 사업 개시 8개월 만에 예산 규모를 3배 넘게 키워온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예산편성은 성과 중심의 지방운용재정을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¹⁰³⁾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동 사업은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형 IB 수업평가 모델과 상당 부분 유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IB 프로그램 도입·확산을 지원하고, ‘한국형 IB 수업평가 모델’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표-68]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중 IB 교육과정 관련 사항¹⁰⁴⁾

IV. 추진과제(안)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교실 수업 혁신

- (수업·평가 혁신 추진)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추진

*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수업 등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탐구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학교급별 교과별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KICE, '20)

103)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4)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2023.6.),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16쪽.

- 탐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IB 프로그램 도입·확산을 지원하고 탐구 기반 수업·평가 우수 모델 발굴 확산

* '23년 8개교육청 225교 준비·운영중 (준비교 142교, 관심교 48교, 후보교 17교, 인증교 18교)

※ 교원연수(500명, '23.7.~), IB 준비교·운영교 지원, 교육부-교육청 협의체 운영

※ IB 수업 평가 시스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정책연구('23~),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형 IB 수업평가 모델'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IB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차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구축을 위한 연구추진단 운영 등이 향후 중앙정부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주체별, 교과별, 학교별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개발·운영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연구추진단 운영은 향후 교육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입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IB 교육과정 인증체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IB 프로그램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31개교를 IB 탐색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IB 탐색학교와 무관하게 2024년부터 40개교가 IB 인증단계인 관심학교 또는 후보학교 지정을 추진할 것을 가정하여 탐색학교 운영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IB 탐색학교의 성과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확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 확대를 위해서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의 집행 성과와 국가 교육 정책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 IB 교육과정 탐색학교 운영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평생진로교육국

가) 역사교육활성화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19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2,630	-	74,270	32,630	△41,640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 사업지원	31,030	-	74,270	31,030	△43,240	
일제잔재청산지원	1,600	-	좌동	1,600	좌동	

○ “역사교육활성화지원”은 동아시아 역사 이해를 통해 사제동행 동아시아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청산을 위한 학교 컨설팅, 학교 내 일제 잔재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동아시아 평화교육교류 사업지원’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과 교원이 동아시아 국가의 중·고등학생 및 교원과 함께 공동 참여하는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3천 1백만원의 편성 예산 중 사제동행 동아시아 교육교류 프로그램 위탁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사업추진 경비 등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69]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30,830 천원
- (교류프로그램)기획검토수당	(40,000원+10,000원)×5명×2회 =	500 천원
- (교류프로그램)원가조사수수료	330,000원×1회 =	330 천원
- (교류프로그램)위탁사업비	30,000,000원×1회 =	30,000 천원
· 업무추진비		200 천원
- (교류프로그램)사업추진경비	20,000원×10명×1회 =	200 천원

- 먼저 동 사업의 2022~2023년도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교육 방법 모색 등의 목적으로 교원(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컨설팅) 및 교육전문직 43명이 제주도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는바,

2022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1일 한일 공동포럼 운영을 위해 굳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송악산 둘레길, 성산일출봉 등 5천만원의 외유성 포럼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외유성 예산낭비의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표-70] 2022년 사업추진 내용

역사교육교류 프로그램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일시	2022.12.15.(목) ~ 12.17.(토)
	대상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컨설팅 교원 및 교육전문직 43명
	장소	제주 일제 고사포 진지, 4.3. 평화공원 외
	내용	역사 현장 탐방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교육 방법 모색

- 또한 2023년에는 교육위원회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지원(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 과 ‘일제 잔재청산지원’ 사업 간의 추진 방향성이 서로 상충되고,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사유로 사업비(1억 6천 9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 을 ‘동아시아 교육교류협력 사업’ 으로 변경하여 제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7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교육위에서는 이를 동일 예산으로 보아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2023년 10월 학생은 제외한 채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만을 대상으로 베트남 역사교육체험단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청은 2024년에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학생(중·고)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장소와 기간 및 내용 등을 종전과 유사하게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교

원들만의 외유성 연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2023년 베트남 호치민시 교육청의 MOU 요청에 따른 MOU 체결이 필요하다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으로도 충분히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사업비 삭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71] 2023~2024년도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교

2023년			2024년		
기간	2023.10.18.(수)~10.21.(토), 3박 4일		기간	2024. 5.~8. 중 3박 4일 운영	
대상	계획 (본예산)	-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계획	중·고 학생 및 교원 20명
	변경 (추경)	-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6명) - 교원(22명)		추진	미정
장소	베트남(호치민시 교육청, 역사박물관 등)		장소	베트남(예정)	
내용	본 예산	- 동아시아 평화 지향의 역사인식 함양을 위한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	내용	- 2023년 베트남 호치민시 교육청의 MOU 요청에 따른 후속 작업	
	추경	- 동아시아 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교류 사업		- 동아시아 이해 강화를 위한 교원·학생 교육 교류 활성화	
예산	48,500천원		예산	30,830천원	

나)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22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50,341	331,047	603,147	219,294	△52,806	
불법촬영예방	408,900	136,000	408,100	272,900	800	
사안처리지원단운영	12,000	40,920	좌동	△28,920	좌동	
사안처리지원단운영 (특별교부금)	-	26,400	좌동	△26,400	좌동	
성사안처리및회복 교육지원	36,796	38,559	좌동	△1,763	좌동	
성인권전문기운영	92,645	89,168	좌동	3,477	좌동	

-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은 스쿨미투 발생 학교에 해당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지난 본예산 대비 2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고 추경예산 대비 5천 3백만원 감액된 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불법촬영예방’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특수 각 학교에 불법촬영 기기 탐지 전문 점검업체에 위탁 점검을 의뢰하여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4억 9백만원의 편성 예산 전액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3교에 연 2회 위탁 점검을 의뢰하는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표-72]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408,900	천원
- 위탁용역	(150,000원×2회)×1,363교 =	408,900 천원

-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2023년 본예산 심의시 당초 예산 요구액 4억 8백만원 중 2억 7천 3백만원을 삭감(66.9%)하였으나, 교육

청에서는 2023년 1차 추경을 통해 동 사업을 4억 8백만원으로 다시 확대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2023년보다 80만원을 증액하여 4억 9백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2021~2023년) 위탁업체를 통해 실시한 서울시 관내 학교 불법촬영 기기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위탁업체의 불법촬영 발견 및 조치 건수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아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불시 점검이 필요한 불법촬영 기기 점검 일정을 사전에 일선 학교에 통보함으로써 점검의 효과가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는 바, 공개적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과 함께 교육청의 안이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¹⁰⁵⁾

[표-73] 최근 3년간 위탁업체 불법촬영 불시점검 결과

연번	연도	점검 학교	발견건수	조치건수	비고
1	2021	76개	없음	없음	연 1회 점검
2	2022	1,976개	없음	없음	연 2회 점검
3	2023	1,623개	없음	없음	연 2회 점검

※ 2020~2019년 외부 위탁점검 미실시

- 서울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불법촬영 점검 위탁과 더불어 2021년도에 이미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외선(렌즈) 탐지기 구입 예산을 지원하였고, 외부 업체에서 기탁받은 휴대용 불법촬영 기기 탐지 카드를 일선 학교에 배부하여 학교 자체 점검 장비 지원에 대한 예산과 장비까지 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5) 매년 2번씩 점검하는 교내 불법촬영..적발 '0건', 왜?, MBC 뉴스데스크, 2021.9.29. 시도교육청에서 단속 날짜를 미리 공지하고 점검 일주일 전에 미리 점검공문을 보내 날짜를 조율하거나 날짜를 적시한 사례가 있었음.

[표-74] 2021년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구입 현황

□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구입 현황

연번	구입연도	내용	산출기초	금액(원)
1	2021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구입비 지원	4,500,000원*11개 교육지원청	49,500,000
		-보유장비 형태: 적외선(렌즈) 탐지기		
2	2021	휴대용 불법촬영기기 탐지카드	지정기탁금품 (330원*30,000장=9,900,000 상당)	

□ 휴대용 불법촬영기기 탐지 카드 배부 현황

(단위: 개)

구입연도	초	중	고	각종	특수	합계
2021	29,231	24,320	21,170	200	1,224	76,942

※ 휴대용불법촬영기기 탐지카드: 2021년 제8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정[기탁자: ㈜몰○○]

- 교육청은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대여용 적외선탐지기와 휴대용 불법촬영기기 탐지카드 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자체계획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2회의 위탁용역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교육청 보유 탐지 장비의 확대를 고려하여 민간 위탁용역비는 각 학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전제로 연 1회 점검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75] 2024년 학교 내 불법촬영 기기 점검체계 구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기간: 2024. 1. ~ 12.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63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불시 전수 점검 위탁용역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불시 점검) -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여하여 수시 점검 - 학교 내 불법촬영 기기 점검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청 모니터링 강화

다)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민주시민생활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226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12,910	429,140	좌동	△116,230	좌동	
고위직별도교육	41,960	50,100	좌동	△8,140	좌동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225,250	297,400	좌동	△72,150	좌동	◦ 교직원 대상 사업 폐지 및 학생 사업 규모 축소
성교육교원역량강화	26,000	63,140	좌동	△37,140	좌동	
학생대상회복교육지원	19,700	18,500	좌동	1,200	좌동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지원청별 학교 관리자와 학생 및 성교육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본예산 대비 1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3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고위직 별도 교육’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 교육감 이하 과장급 이상, 학교별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의 금년도 편성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8백만원이 감액된 4천 2백만원이며, 운영비 3천 4백만원과 업무추진비 8백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이는 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러나 「2024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동 사업은 전체 예산 4천 2백만원 중 강사수당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예산의 20%(8백만원)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은 과도한 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76] 2024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33,600	천원
- 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100,000원)×30기관×1회)+ ((160,000원+90,000원+100,000원)×11지역청×6회)	=	33,600	천원
· 업무추진비			8,360	천원
- 업무추진비	20,000원×19명×2회×11지역청	=	8,360	천원

[표-77] 「2024년도 서울교육 예산편성 기본지침」 p.39

업무추진비(320)	
○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 대외 출전 각종 격려금, 학생·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비의 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편성 (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편성	
- 참석인원 및 횟수는 최소한의로 산정하고 증액 지양	

라) 학교폭력예방대책-민주시민생활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248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036,148	4,386,544	4,897,544	649,604	138,604	
교육법률지원단운영	1,046,731	1,085,146	좌동	△38,415	좌동	
보호관찰멘토링제운영	7,660	11,020	좌동	△3,360	좌동	
심의위원회운영	3,607,184	2,854,876	3,365,876	752,308	241,308	◦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생활교육협의체운영	52,000	104,000	좌동	△52,000	좌동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시수경감지원	308,125	311,750	좌동	△3,625	좌동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14,448	19,752	좌동	△5,304	좌동	

○ “학교폭력예방대책”은 학교폭력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 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예산은 지난 본예산 대비 6억 5천만원, 추경예산 대비 1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50억 3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심의위원회 운영’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실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심의 건수 증가를 예상하여 지역청 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등을 증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 사업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천 2백만원, 추경예산 대비 2억

4천 1백만원 증액한 36억 7백만원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2021~2022년)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코로나 종결로 50% 상향(1,000회→2,000회)된 것을 근거로 코로나 종결 이후인 2024년에도 지역청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3,500건으로 단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심의위원회 관련 수당으로 31억 5천만원을 추계·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2021~2023.8) 서울시교육청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2021년 1,954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4배 증가하였으나, 2023년 학폭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1,285건이 발생하여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혹은 유사한 수준의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78] 최근 3년간(2021~2023.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단위: 건)

교육지원청	2021	2022	2023 3~8월	4주 이내 심의 건수		4주 이후 심의 건수
동부	161	225	103	21	(25.6%)	82
서부	223	341	146	29	(19.8%)	117
남부	166	218	125	47	(60.2%)	78
북부	229	334	124	8	(6.8%)	116
중부	109	119	67	14	(26.4%)	53
강동송파	241	326	148	3	(2.0%)	145
강서양천	241	345	159	39	(32.5%)	120
강남서초	165	309	152	1	(0.6%)	151
동작관악	137	223	93	18	(24.0%)	75
성동광진	131	176	89	37	(71.1%)	52
성북강북	151	202	79	10	(14.4%)	69
계	1,954	2,818	1,285	227	(17.6%)	1,058

-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및 휴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학교폭력 발생이 감소되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3,500회를 기준으로 편성한 한 동 사업예산의 추계는 과대 편성으로 판단되는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79]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 인건비		86,534	천원
- (지역청)인건비	12,140원×8시간×27일×3월×11청 =	86,534	천원
· 운영비		3,399,900	천원
- (본청)운영비	5,000,000원×1청 =	5,000	천원
- (지역청)기타일반수용비	2,000,000원×11청×4회 =	88,000	천원
- (지역청)심의위원회관련수당	(100,000원+50,000원)×6명×3,500회 =	3,150,000	천원
- 공공요금	400,000원×12월×3청 =	14,400	천원
- 등기송달료	3,000원×3,500건×11청 =	115,500	천원
- 렌탈비	250,000원×12월×3청 =	9,000	천원
- 청소용역비	500,000원×12월×3청 =	18,000	천원
· 여비		18,600	천원
- 여비	3,000,000원×4청 =	12,000	천원
- 여비(시도간공동심의위원회)	30,000원×10회×2명×11청 =	6,600	천원
· 업무추진비		12,5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20명×1회 =	400	천원
- 사업추진경비(교육지원청)	20,000원×55명×11청×1회 =	12,100	천원
· 보전금		80,000	천원
- 심의위원회위원급량비	8,000원×5명×2,000회 =	80,000	천원
· 민간이전		9,650	천원
- (지역청)건강보험부담금	7,866,720원×3.545%×11청 =	3,068	천원
- (지역청)고용보험부담금	7,866,720원×1.75%×11청 =	1,515	천원
- (지역청)국민연금부담금	7,866,720원×4.5%×11청 =	3,895	천원
- (지역청)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7,866,720원×3.545%×12.81%×11청 =	393	천원
- (지역청)산업재해보험료	7,866,720원×0.9%×11청 =	779	천원

[표-80] 2023~2024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예산 편성내역 비교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편성예산 (운영비)	- (지역청)심의위원회관련수당 150,000원×5명× <u>3,000회</u> =2,250,000 천원	편성예산 (운영비)	- (지역청)심의위원회관련수당 (100,000원+50,000원)×6명× <u>3,500회</u> =3,150,000천원
전년대비 증감사유	예상 심의 건수 <u>2,000건('22)에서</u> <u>3,000건('23)</u> 상향 조정	전년대비 증감사유	예상 심의 건수 <u>2,000건('22)에서</u> <u>3,000건('23)</u> 상향 조정

마) 민주시민교육강화-민주시민생활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276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82,860	10,000	76,070	372,860	306,790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124,660	-	좌동	124,660	좌동	
참여형민주시민교육 지원	243,000	-	62,320	243,000	180,680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편성
학생봉사활동연계 고령층디지털역량강화	4,900	10,000	좌동	△5,100	좌동	
학생봉사활동지원 거버넌스구축	10,300	-	3,750	10,300	6,550	

○ “민주시민교육강화” 는 민주시민 교육역량강화 및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며, 학생봉사활동과 연계한 고령층 디지털역량강화 및 학생봉사활동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예산은 지난 본예산 대비 3억 7천 3백만원, 추경예산 대비 3억 7백만원 증액된 3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81] 2023년(본예산·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편성내역 비교

(단위: 천원)

2023년 본예산(전액삭감)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일부삭감)		2024년 본예산안	
사업명	편성예산	사업명	편성예산	사업명	편성예산
학교 민주시민 교육지원	- 운영비: 288,300천원	민주시민 교육역량 강화지원	- 운영비: 35,130천원	민주시민 교육역량 강화지원	- 운영비: 123,540천원
	- 업무추진비: 11,800천원		- 업무추진비: 3,200천원		- 업무추진비: 1,120천원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	- 운영비: 55,480천원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	- 운영비: 59,880천원
			- 업무추진비: 6,840천원		- 업무추진비: 3,12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80,000천원
합계	300,100천원	합계	100,650천원	합계	367,660천원

※ 학생봉사활동연계, 학생봉사활동지원 거버넌스구축 고령층디지털역량강화는 제외하고 비교함.

□ **민주시민 교육역량 강화지원**

- 이 중 ‘민주시민 교육역량 강화지원’은 교원에게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교육」자료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이러한 토론수업 설계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 1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본예산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예산편성의 비중이 위탁사업비, 강사료, 임차료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위 심의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던 사업임에도 재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표-82]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123,540 천원
-	(교육자료)검토수당	(40,000원+10,000원)×6명×4회×3종 =	3,600 천원
-	(교육자료)원가조사수수료	330,000원×1회 =	330 천원
①	- (교육자료)편집·인쇄·배송용역비	10,000,000원×3종 =	30,000 천원
②	- (교육자료)동영상 제작 용역비	40,000,000원×1회 =	40,000 천원
-	(직무연수)강사수당	(160,000원+90,000원+90,000원+150,000원)×5명 =	2,450 천원
-	(직무연수)시설임차료	2,000,000원×1회 =	2,000 천원
-	(토론회)기획검토수당	(40,000원+10,000원)×5명×2회 =	500 천원
-	(토론회)원가조사수수료	330,000원×2회 =	660 천원
-	(토론회)권역별운영용역비	22,000,000원×2회 =	44,000 천원
·	업무추진비		1,120 천원
-	(직무연수)사업추진경비	(20,000원×40명)×1회 =	800 천원
-	(교육자료, 토론회)사업추진경비	20,000원×8명×2회 =	320 천원

[표-83] 2024년 위탁용역비((교육자료) 편집·인쇄·배송, 동영상 제작) 산출 내역

① 「선거교육」자료,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 사례집」

구분	산출 내역(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단위: 천원)
편집비	14,000원×120매×3종 =	5,040
인쇄비	8,000원×1,000부×3종 =	24,000
배송료	320,000원×3회 =	960
계		30,000

② 동영상 제작

구분	산출 내역	금액(단위: 천원)
기획비 (원고구성, 스튜디오 대관료, 출연료)	3,500,000원×2편=	7,000
촬영비(기술 인건비)	4,450,000원×2편(20분)=	8,900
촬영비(기술 장비비)	3,500,000원×2편(20분)=	7,000
편집비(컨셉 디자인)	1,464,000원×1식=	1,464
편집비(영상편집)	6,000,000원×2편(20분)=	12,000
부가가치세	3,636,400원×1식=	3,636
계		40,000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예산안의 2023년도와 2024년도 편성내역을 비교해 보면,

2024년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삭감의 주요 사유였던 위탁사업비, 연수 및 워크숍 위주의 편성을 피하고 토론회와 직무연수 위주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현안 교육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립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교육연수원, 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선거관련 자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자료 위탁 제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

○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은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 컨설팅단’과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선도단’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해당 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예산은 2023년 본예산 심의시 수용비성,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가 2023년 추경에서 다시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금번에는 1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운영비성 편성예산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총 사업비의 74.1%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총 120교만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현안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동 사업을 위해 별도의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84] 2023년 및 2024년도 본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

2023년			2024년		
구분	금액	비중	구분	금액	비중
· 운영비	288,300	96.1	· 운영비	59,880	24.6
- 강사수당(교육지원청)	= 22,000	7.6	- (본청)강사수당	= 4,450	7.4
- 일반수용비(교육지원청)	= 33,000	11.4	- (본청)시설임차료	= 6,000	10.0
- 임차료(교육지원청)	= 22,000	7.6	- (본청)운영수당	= 600	1.0
- 기타수용비(교육지원청)	= 11,000	3.8	- (본청)행사용품비	= 2,400	4.0
- 기타운영수당(교육지원청)	= 11,000	3.8	- (지원청)강사수당	= 15,400	25.7
- 강사수당	= 25,000	8.7	- (지원청)시설임차료	= 5,500	9.2
- 집필수당	= 9,800	3.4	- (지원청)운영수당	= 1,650	2.8
- 심사수당	= 5,000	1.7	- (지원청)행사용품비	= 3,300	5.5
- 교재인쇄구입	= 9,000	3.1	- (한마당)기획검토수당	= 250	0.4
- 교재인쇄구입	= 12,000	4.2	- (한마당)원가조사수수료	= 330	0.6
- 교재제작비(헌법교육)	= 8,000	2.8	- (한마당)참여지원용역비	= 20,000	33.4
- 시설임차료	= 14,500	5.0	· 업무추진비	= 3,120	1.3
- 온라인플랫폼지원	= 1,000	0.3	- (본청)사업추진경비	= 800	25.6
- 위탁사업비	= 100,000	34.7	- (지원청)사업추진경비	= 2,200	70.5
- 행사용품비	= 5,000	1.7	- (한마당)사업추진경비	= 120	3.8
· 업무추진비	11,800	3.9	· 학교회계 전출금	180,000	74.1
- 업무추진비(교육지원청)	= 11,000	93.2	- (사회현안프로젝트학습운영교) 공립학교	= 120,000	66.7
- 업무추진비	= 800	6.8	- (사회현안프로젝트학습운영교) 사립학교	= 60,000	33.3
합 계	300,100		합 계	243,000	

[표-85] 2024년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내역

· 학교회계전출금		180,000	천원
-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교) 공립학교	1,500,000원×80교	=	120,000 천원
-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교) 사립학교	1,500,000원×40교	=	60,000 천원

※ 예: (사회현안탐구 도서비 15,000원×30권×2교과)+(프로젝트 재료비 100,000원×2회)+(학생간식비 5,000원×30명×2회)+(협의회비 100,000원×1식)=1,500,000원

[표-86] 2024년 본예산 '민주시민교육강화' 내 사업내용 비교

사업명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민주시민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는 「선거교육」 자료 제작·보급(1종)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 사례집」 제작·보급(2종)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교육자료 동영상 제작·보급(1회) -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는 사회현안 교육원칙수립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운영(2회) - 「역지사지(易地思之) 공존형 토론수업 설계 직무연수」 운영(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 컨설팅단 역량 강화 연수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선도단 역량 강화 연수 - 교육전문직원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 실천 지원 역량 강화 연수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수업시간에 민주시민교육하기) 운영 온라인 연수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연계 사회현안 실천 사례 나눔 운영 - 지원청별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 실천 교원 연수, 컨설팅, 사례 나눔 운영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교 지원

○ 또한 동 사업예산 내에 편성되어 있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운영’의 경우도 위탁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의 49%가 임차료, 기념품비, 용역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추진 필요 예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87] 2024년도 위탁용역비 편성내역(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운영)

구분		산출 내역	금액(단위: 천원)
직접 경비	강사비	350,000원×4명×1회=	1,400
	시설임차료(장비 포함)	1,000,000원×4실×1회=	4,000
	참가자 기념품비	10,000원×200명×1회=	2,000
	자료집 인쇄	5,000원×200권×1회=	1,000
	참가자 간식비	5,000원×200명×2회=	2,000
	현수막 등 게시물	500,000원×1식=	500
직접 인건비		관리자 300,000원×1명×2회= 운영자 200,000원×8명×2회=	3,800
제경비		3,300,000원×1식=	2,842
기술료		690,000원×1식=	640
부가가치세		1,810,000원×1식=	1,818
계			20,000

바) 특성화고지원-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44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209,380	720,000	2,760,320	1,489,380	△550,940	
AI교육환경구축지원	200,000	120,000	좌동	80,000	좌동	
산학협력사업추진	-	500,000	좌동	△500,000	좌동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09,380	-	2,040,320	2,009,380	△30,940	
특성화고맞춤형사회적 가치교육지원	-	100,000	좌동	△100,000	좌동	

- “특성화고지원”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8천 9백만원 증액,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5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22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접목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9백만원 증액,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3천 1백만원이 감액된 20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상향 발전¹⁰⁶⁾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에 10교, 2024년에는 20교의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부터 64교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¹⁰⁷⁾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직업교육 선도모델 구축 지원금 20억원(교당 1억원)을 편성하였는바,

106)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수업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산·학·관 협력 체제, 영마이스터 인증제 등을 특성화고에 적용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107) 보도자료: 조희연 교육감 “2025년까지 64개 특성화고,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세계일보, 2023.3.14.)

현장에서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미래 직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고 교육력 강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내후년부터 특성화고 64교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운영할 계획인바, 금년에 선도학교 10교에 20억원(교당 2억원)을 지원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에 새로운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바 동 사업비의 삭감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 지원금 교부 계획¹⁰⁸⁾을 살펴보면 선도학교로 하여금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강화 부분, 취약 부분 등에 선택적 집중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에 교부되는 동 사업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교에서 집중 투자할 부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의적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동 교부 계획은 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별도의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동 사업과의 중복 항목은 제외하고 동 사업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8개의 세부 집행 항목(교육환경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 장학 역량 강화, 학생 역량 강화, 수업콘텐츠 개발, 기관 연계교육, 컨설팅, 학교 홍보)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이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추진 사업을 포함한 특성화고 활성화를 여러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중복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8) '2023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운영 지원금 교부 계획(안)'(진로직업교육과-9202, 2023.8.16.)

[표-88] 금번 예산안 편성 특성화고 관련 사업

사업항목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	사업내용
교과교실제운영 (p.1327)	- 교과교실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학생 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직업계고학점제교육과정 운영(p.1328)	-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다과목 개설 지원, 다과목 지도 교원연수 지원,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원, 반도체 등 첨단분야 교육과정 지원,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원 등)
AI교육환경구축지원 (p.1345)	- AI 실습 및 체험 교육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및 운영 지원
실험실습기자재확충지원 (p.1353)	- 실험실습기자재(멀티미디어실 포함) 확충 - 노후 기자재 대체 및 수리
직업계고재구조화대상 학교지원(p.1358)	-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학교 지원 -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내실화 프로그램
교과교실환경구축 (p.1362)	- 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이전 직업계고에 대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 전문교과 학점제 선택과목 확대를 위한 교과교실 조성

사) 진로교육활성화-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384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292,936	5,109,720	5,111,720	△816,784	△818,784	
교육지원청별교원 진로교육연수운영	87,560	98,560	좌동	△11,000	좌동	
진로교사역량강화	60,960	75,960	77,960	△15,000	△17,000	
진로교육센터기본운영	10,640	18,340	좌동	△7,700	좌동	
진로교육자료개발	14,340	32,200	좌동	△17,860	좌동	
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63,886	59,480	좌동	4,406	좌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3,565,550	3,825,180	좌동	△259,630	좌동	
진로활동실구축	490,000	1,000,000	좌동	△510,000	좌동	

- “진로교육활성화” 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 자료개발 및 보급, 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8억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42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은 맞춤형 진로교육지원을 위해 본청 및 11개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별 진로교육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예산의 증액은 행사운영비(용역비)가 2천 6백만원에서 4천 3백만원으로 62.8%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에 행사운영비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자, 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서울진로직업박람회지원단, 소외계층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중 선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워크숍 운영에 집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금년에는 3월에 수립된 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운영 계획상 10월 중 실시 예정이던 워크숍이 11월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 수립도 이

취지지 않고 있으며,

동 사업예산에 편성된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도 ‘학교급별 진로 교육 질적 제고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 없이 증액된 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증액 사유가 불분명한 사업의 예산 조정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89] '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예산 편성 내역

· 운영비		59,186 천원
- 기타운영수당(본청)	(40,000원+10,000원)×10명×2회 =	1,000 천원
- 기타운영수당(지원청)	(40,000원+10,000원)×5명×3회×11청 =	8,250 천원
- 행사용품비(본청)	400,000원×2회 =	800 천원
- 행사용품비(지원청)	140,000원×4회×11청 =	6,160 천원
- 행사운영비(본청)	42,976,000원×1회 =	42,976 천원
· 업무추진비		4,700 천원
- 사업추진경비(본청)	20,000원×15명×1회 =	300 천원
- 사업추진경비(지원청)	20,000원×10명×2회×11청 =	4,400 천원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진로교육활성화지원단, 서울 진로직업박람회지원단, 특성화고진로진학지원단, 꿈키움(배려계층 진로교육)지원단, 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지원단들이 기능 및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살피고 적극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취업지원센터운영-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4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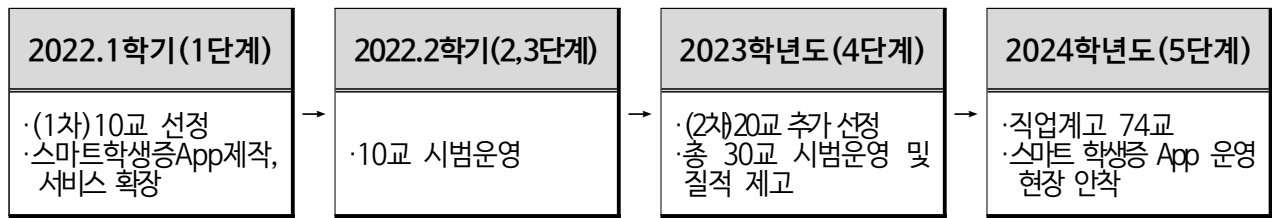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06,850	1,975,650	좌동	△1,468,800	좌동	
AI비대면면접대비 프로그램운영	-	64,050	좌동	△64,050	좌동	
블록체인DID기반 취업지원	506,850	1,513,300	좌동	△1,006,450	좌동	
산학관협력사업	-	87,530	좌동	△87,530	좌동	
센터운영및시설관리	-	63,600	좌동	△63,600	좌동	
역량강화사업 (특별교부금)	-	55,200	좌동	△55,200	좌동	
직업계고졸업생성장 경로지원	-	167,170	좌동	△167,170	좌동	
취업처발굴사업 (특별교부금)	-	24,800	좌동	△24,800	좌동	

- “취업지원센터운영”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계고 취업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5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블록체인DID기반취업지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DID(Decentralize Identity, 분산신원인증) 스마트학생증(앱)을 보급함으로써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6백만원이 감액된 5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2022년에 시행되었으며 당시 운영 계획¹⁰⁹⁾에 따르면 서울 시교육청은 2022학년도에 10교, 2023학년도에 30교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109) ‘2022 블록체인 DID(Decentralize Identity)기반 취업 지원 기본 운영 계획(안)’(진로직업교육과-5436, 2022.5.12.)

[표-90] 기본 운영 계획상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2월에서야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1차 시범학교 10교를 선정하여 5월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10월에 추가 20교를 선정하였고 내년 3월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금번 편성된 동 사업예산은 2024년 사업대상 확대예산이 아니라 기존 선정 총 30교에 대한 보완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즉 동 사업이 처음부터 사업 진척 시기 및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계획 없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5억 8천만원, 2023년도 15억 1천 3백만원의 본예산 편성액이 거의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당시의 사업설명과 다르게 2024년에도 기존 선정교를 대상으로 한 보완 및 유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10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업효과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 선정교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무상급식-체육건강예술평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477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13,747,099	410,019,881	좌동	3,727,218	좌동	
(아학생)아침이있는 학교생활	40,000	-	좌동	40,000	좌동	
(유치원)식품관리비	22,503,922	22,652,781	좌동	△148,859	좌동	◦ 물가 인상을 반영
(유치원)인건비	17,068,605	17,052,523	좌동	16,082	좌동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식기류렌탈세척운영	380,000	-	좌동	380,000	좌동	◦ 2024 신규 사업
식품관리비	298,551,606	287,940,637	좌동	10,610,969	좌동	◦ 물가 인상을 반영
인건비	74,321,601	80,169,851	좌동	△5,848,250	좌동	◦ 공립 인건비 교 육 공무원 통합 인 건비 편성
조리종사원 대체인력인건비	881,365	2,204,089	좌동	△1,322,724	좌동	◦ 공립 대체인건비 교육공무원 대 체 인건비 편성

○ “무상급식”은 각급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비 및 인건비 소요액 중 교육청 분담금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4,137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아학생)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교당 2천만원*2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 및 학습 능력 증진 측면에서 아침을 굶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¹¹⁰⁾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금년 2

110)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청소년 아침 식사 결식을 약 32%...학교 조식 제공 검토 필요"(세계일보, 2022.11.18.)

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 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없었던 조식 시범사업 3교를 선정하고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관리비’ 에서 조식 사업비 4천만원(1천 8백만원*2교, 4백만원*1교)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예산원칙인 의회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예산 운용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엄중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기류렌탈세척운영

- ‘식기류렌탈세척운영’ 은 학교 급식조리실 업무경감을 위해 외부업체의 식기류(식판, 수저 세트) 세척 대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3억 8천만원(교당 3천 8백만원*10교)을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동 사업을 이미 올해부터 시행하였고, “무상급식” 예산의 ‘식품관리비’ 에서 사업비 11억 6천 4백만원을 상반기 33교, 하반기 31교에 교부하였습니다.

[표-91] ‘식기류렌탈세척운영’ 금년도 예산 교부 내역

구분	교부금액(천원)	비고
상반기(3월)	660,000	1교당 22,000천원*, 33교**
하반기(9월)	504,000	1교당 18,000천원, 31교
계	1,164,000	

* 산출내역: 식기 1세트(식판+숫가락+젓가락) 단가 500원 × 급식일수 100일 × 학생수 440명 기준

** 공동조리교는 높은 학교급에 일괄 교부

- 비록 최근 조리(실무)사 지원자 미달, 높은 이직률 등으로 조리(실무)사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식기류 렌탈 운영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 거친 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뭉치돈 예산을 편성한 뒤 필요시 씹짓돈 사용하듯 자의적으로 별도 사업에 기존 예산을 활용한 것은 의회의 사전의결 원칙을 위배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 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 보건교육연구활동지원-체육건강예술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497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73,960	112,160	좌동	△38,200	좌동	
건강증진학교운영	15,000	30,000	좌동	△15,000	좌동	◦ 사업 축소
보건교수학습방법개선	43,160	46,280	좌동	△3,120	좌동	
보건교육컨설팅 지원단운영	15,800	35,880	좌동	△20,080	좌동	◦ 컨설팅지원단 워크숍 운영비 감액

- “보건교육연구활동지원”은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천 8백만원이 감액된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건강증진학교운영’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구성원의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금번 동 사업예산의 감액은 현재 초·중·고 1교에 각각 1천만원씩 교부 하였던 사업비를 5백만원씩으로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소수의 학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동 사업의 낮은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특히 동 사업은 교육감 3기 공약(5-2-1, 학생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제도 정비) 관련 사업으로, 당초 내년 7교로 사업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과 달리 2024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물량인 3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¹¹¹⁾,

111) 3기 교육감 공약(5-2-1) 건강증진학교 연차별 추진 목표

사업	최종목표	임기				
		2022.7.~12.	2023	2024	2025	2026.1.~6.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증진학교 운영	초·중·고 건강증진학교 운영 (20교)	-	초1, 중1, 고1교 (3교)	초3, 중2, 고2교 (7교)	초6, 중3, 고3교 (12교)	초10, 중5, 고5교 (20교)

초·중·고 약 1,320교 중 3개의 학교에서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학생 건강권 보장과 보건교육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 더욱이 동 사업의 내용 및 목표는 ‘학교교의사업’ (126교 대상, 학교-인근 병의원과의 연계 강화, 사업별 설명자료 1504쪽), ‘학교보건지원 강사인건비’ (300교 대상, 강사 지원을 통해 보건교육·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증진 도모, 사업별 설명자료 1509쪽)와 매우 유사한바, 동 사업에 산의 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 특수교육관련서비스-특수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549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1,594,505	20,834,735	좌동	759,770	좌동	
보조공학기기지원	400,420	951,840	좌동	△551,420	좌동	◦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수 축소
장애학생가족지원사업	35,255	52,250	좌동	△16,995	좌동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16,517,000	15,485,250	좌동	1,031,750	좌동	◦ 치료지원 이용 학생 증가
체험활동등교육활동 보조인력인건비	1,427,665	1,188,373	좌동	239,292	좌동	◦ 시간제 지원 인력 증가
통학비지원	1,496,000	1,314,800	좌동	181,200	좌동	◦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 증가
통학차량실무사 인건비지원	1,494,165	1,628,757	좌동	△134,592	좌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224,000	213,465	좌동	10,535	좌동	◦ 진단평가신청자 증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5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통학비 지원’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 증진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출석일수*1일 2,000원, 보호자 동반 시 4,000원)¹¹²⁾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14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2021~2023년) 동 사업예산은 동일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동 사업예산을 증액하면서, 그 사유로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수¹¹³⁾ 증가(3,460명→4,400명)를 증액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112) 통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통학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113) 보호자 동반 학생은 2명으로 산정함.

[표-92] '통학비지원' 예산 편성 내역

(2023년도 본예산)					
· 학교회계전출금				1,314,800	천원
- 통학비지원(공립)	2,000원×2,230명×190일	=	847,400	천원	
- 통학비지원(사립)	2,000원×1,230명×190일	=	467,400	천원	
(2024년도 본예산안)					
· 학교회계전출금				1,496,000	천원
- 통학비지원(공립)	2,000원×2,600명×170일	=	884,000	천원	
- 통학비지원(사립)	2,000원×1,800명×170일	=	612,000	천원	

○ 그러나 동 사업예산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학생 수는 이미 4,500명을 넘어섰는 바, 학생 수 증가를 예산증액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현재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출석 일수는 장애별 경중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고, 일반학생의 출석 일수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의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니라 집행예산액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올해의 집행을 추이를 살펴볼 때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93] '통학비지원' 예산 집행 내역(대상 학생수)

(단위: 천원 명)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추가 지원인원	1학기 지원인원	2학기 지원인원
2021	1,314,800	1,294,469	10	4,299	4,362
2022	1,314,800	1,400,440	37	4,530	4,443
2023	1,314,800	662,275*	1,282	4,678	-

* 2학기분 12월 집행 예정

[표-94] '통학비지원' 예산 집행 내역(집행액)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A+B+C)	추가 집행액 (A)	1학기 집행액 (B)	2학기 집행액 (C)
2021	1,314,800	1,294,469	946	664,383	629,140
2022	1,314,800	1,400,440	5,902	702,545	691,993
2023	1,314,800	662,275*	31,280	630,995	-

* 2학기분 12월 집행 예정

5) 교육행정국

가) 학교신설-학교지원과(사업별 설명자료 1662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9,432,900	50,405,280	81,738,703	△10,972,380	△42,305,803	
공립유	10,459,670	14,672,303	16,023,138	△4,212,633	△5,563,468	◦ 유치원 신설수 감소에 따른 건설비 감소
공립초	25,408,550	35,570,577	35,634,272	△10,162,027	△10,225,722	◦ 초등학교 착공에 따른 건설비 감소
공립중	764,680	162,400	360,826	602,280	403,854	◦ 중학교 내부비품비 물량 증가
공립특수	2,800,000	-	29,720,467	2,800,000	△26,920,467	

- ‘학교신설’ 사업 중 ‘공립유’ 는 (가칭)신길유 등 5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보다 42억 1천 3백만원 감액된 104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 ‘(가칭)신길유’ 는 신길재개발사업 조합이 영등포구에 기부채납한 부지 일부(영등포구 신길동 339-30 일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으로 27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표-95] ‘(가칭)신길유’ 예산편성 현황

· 자치단체등이전		2,789,302	천원
- (가칭)신길유 자치단체간부담금	2,789,302,000원×1식	=	2,789,302 천원
· 건설비		7,670,368	천원
- (가칭)대방유 시설비	2,273,360,000원×1식	=	2,273,360 천원
- 신암초병설유 시설비	2,292,716,000원×1식	=	2,292,716 천원
- (가칭)강현유 시설비	2,390,000,000원×1식	=	2,390,000 천원
- 남산초병설유 시설비	714,292,000원×1식	=	714,292 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신길유치원 관련하여 2019년 11월 11일에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인근 사립유치원 민원에 따른 학급수 조정,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협의 과정 지연, 교육환경평가 재 실시(일조 법적기준 불만족) 등으로 자체 재정 투자심사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현재 사업비는 재정투자심사 당시 사업비 (84억 9천만원) 대비 46.4%(39억 4천만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표-96] '(가칭)신길유'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19. 5. 16.	•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기본계획 수립
2019. 7. 5.	• (가칭)신길유치원 부지 무상사용 MOU체결(교육감-영등포구청장)
2019. 11. 11.	• 자체 재정투자심사 완료 (적정)
2020. 3. 16.	• 공유재산심의
2020. 4. 29.	• 공유재산관리계획
2021. 7. 2.	• 공공건축심의 완료 (영등포구청)
2021. 10. 26.	• (가칭)신길유치원 학급수 조정, 10(2)학급 → 8(2)학급
2022. 1. ~ 2023. 11.	• 설계공모 완료 및 설계용역 진행중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르면([표-97] 참조), 투자심사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착공)이 지연된 사업, 총 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동 사업은 아직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비는 이미 당초 사업비 대비 46.4% 증가한 상황인 바, 교육청은 동 사업에 대해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27억 8천 9백 만원은 절차 위반으로 예산심의회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97] 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대상사업

① **(지연.보류 사업)** 투자심사 승인 후 다음연도부터 가산하여 3년 이상 사업 추진(착공)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② **(사업비 증가 사업)**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 대상 여부 판단

㉠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심사**

※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times 20/100 + 150억원$$

※ 다만, 사업규모 변동 없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에서 제외

㉡ 사업비가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되는 경우 중앙의뢰심사 대상이 되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됨

나) 학교신설-학교지원과(사업별 설명자료 1662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9,432,900	50,405,280	81,738,703	△10972380	△42305803	
공립유	10,459,670	14,672,303	16,023,138	△4,212,633	△5,563,468	◦유치원 신설수 감소에 따른 건설비 감소
공립초	25,408,550	35,570,577	35,634,272	△10,162,027	△10,225,722	◦초등학교 착공에 따른 건설 비 감소
공립중	764,680	162,400	360,826	602,280	403,854	◦중학교 내부비품비 물량 증가
공립특수	2,800,000	-	29,720,467	2,800,000	△26920467	

○ ‘학교신설’ 사업은 학교 신설 사업예산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보다 109억 7천 2백만원 감액된 394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 ‘공립특수’는 특수학교의 지역별 균형 배치 및 동부지역 장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 ‘(가칭)동진학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진학교 신설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297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예산안에는 건물시설비 및 설계비 등으로 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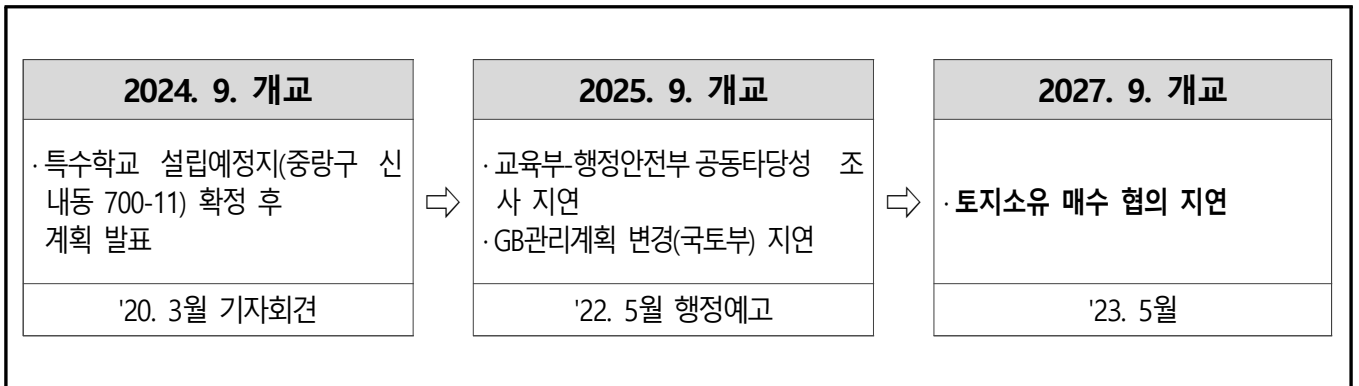
[표-98] 특수학교 설립 예산 세부 산출 내역

· 건설비		2,800,000	천원
- 감리비	500,000,000원×1식	= 500,000	천원
- 건물시설비	2,000,000,000원×1식	= 2,000,000	천원
- 설계비	300,000,000원×1식	= 300,000	천원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3월, 동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 발표하고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 조사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면서 개교일을 2025년 9월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제318회 임시회)도 금년 4월 동진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으나, 이후 교육청과 토지소유자 간의 설립부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지연되면서 학교 개교일이 다시 2027년 9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표-99] 특수학교 개교 시기 변경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토지매입을 2024년 9월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실시 설계를 진행하여 202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금번 예산안에 설계비 및 시설비를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진학교에 대한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의 매입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토지소유자들과의 매수 협의가 토지매입 완료 시기인 2024년 10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경우 실제 토지소유권이 최종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2025년 상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표-100] (가칭)동진학교 추진 현황

추진 절차	주요 내용	예정일
토지 및 물건조사	- 토지 및 수목 등 지장물, 각종 권리 조사	2023. 12월
보상평가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 산정	2024. 5월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액 통지 및 협의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2024. 6~8월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재결 신청	-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고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2024. 11월
재결보상금 지급·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재결보상금 지급(미협의 물건, 보상금 공탁 포함) 및 소유권 이전	2025. 상반기

- 더욱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시¹¹⁴⁾ 동진학교 설립부지에 총 15명의 토지소유자가 있고 이들과의 토지매입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까지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으로 29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1월 현재까지 토지매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미 확보된 토지매입비 전액을 명시이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인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토지매입을 주장하며 건설비 등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동 사업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비의 선제적인 확보보다 학교설립의 사전절차인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토지매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맞춰 추경예산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1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3.5.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페이지.

[표-10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가칭) 동진학교 예산 현황

· 총 소요예산		29,720,467	천원
· 토지매입비		27,820,467	천원
- (교육재정과) 토지및지장물보상비	2,261,000원×12,247㎡ =	27,690,467	천원
- (교육재정과) 측량및감정평가용역비	130,000,000원×1식 =	130,000	천원
· 건설비		1,800,000	천원
- (동부) (가칭)동진학교 설계비	1,800,000,000원×1식 =	1,800,000	천원
· 보전금		100,000	천원
- (동부) (가칭)동진학교 설계공모보상금	100,000,000원×1식 =	100,000	천원

다) 재산관리일반운영비(유휴시설물관리)-교육재정과(사업별 설명자료 1686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644,935	1,263,410	1,049,992	381,525	594,943	
공유재산심의회운영	16,240	13,620	좌동	2,620	좌동	
유휴시설물관리	1,203,505	467,450	554,032	736,055	649,473	◦ 폐교(3교), 휴교 (5교) 추가 반영
재산관리일반	399,590	751,540	451,540	△351,950	△51,950	◦ 2022년도 불용액 검토에 따른 감액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유지관리	25,600	30,800	좌동	△5,200	좌동	

-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중 ‘유휴시설물관리’ 사업은 학교 이전 및 폐·휴교로 인한 유휴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2억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유휴시설물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폐교’ 6개교(염강초, 공진중,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 학교 증개축 사업 등으로 인한 ‘휴교’ 5개교(면중초, 금호여중, 반포초, 반포중, 신화중), 학교 이전으로 인한 ‘이전적지’ 1개교(공항공) 등 총 12개교입니다.

[표-102] 유휴시설물 종류별 관리 현황

관리청	유휴시설물 종류		
	폐교	휴교	이전적지
본청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	-	-
동부	-	면중초	-
중부	-	금호여중	-
강서양천	염강초, 공진중	신화중	공항공
강남서초	-	반포초, 반포중	-
성동광진	화양초	-	-

- 이와 같은 유희시설은 현재 학교 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노후시설 관리,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 학교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무인경비 및 유인경비 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희시설 관리는 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전기안전점검, 전기요금, 정화조청소, 소방안전점검용역,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유인경비용역, 무인경비용역, 유지관리물품, 이적지관리사업추진경비 등 총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및 지원청별로 각 세부 내역별 산출 예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사업별 설명자료 1688~1689 쪽).
- 그러나 이 중 관리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인경비 용역비’는 유희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산출 단가를 상이하게 추계하고 있는바,
 - 먼저 면중초(동부), 금호여중(중부), 신화중(강서양천), 반포초·반포중(강남서초) 등 5개교는 휴교 상태로 유희시설 종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인경비 1인 단가를 면중초(동부) 5백 30만원, 금호여중(중부) 3백 90만원, 신화중(강서양천) 3백 50만원, 반포초·반포중(강남서초) 5백 50만원으로 추계하는 등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모두 상이합니다.

[표-103] 유인경비용역 관리청별 예산 내역

• (본청) 유인경비용역	3,500,000원×2명×10월×3교	=	210,000	천원
• (동부) 유인경비용역	5,270,000원×10월	=	52,700	천원
• (중부) 유인경비용역	3,870,000원×10월	=	38,700	천원
• (강서양천) 유인경비용역	3,500,000원×2명×12월×3교	=	252,000	천원
• (강남서초) 유인경비용역	5,500,000원×11월×2교	=	121,000	천원
• (성동광진) 유인경비용역	3,310,000원×2명×12월	=	79,440	천원

- 또한 무인경비 용역의 경우에도 도봉고·덕수고·성수공고(본청), 염강초·공진중(강서양천), 화양초(성동강진) 등 6개교는 폐교 상태로 유희시설 종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무인경비 1인 단가 역시 본청 및 교육지원청 별로 모두 상이한 실정이고, 그 외 소방안전점검용역, 전기안전점검 등의 세부 내역 단가 및 점검 횟수 등도 관리 기관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104] 무인경비용역 관리청별 예산 내역

• (본청) 무인경비용역	200,000원×10월×3교 =	6,000 천원
• (동부) 무인경비용역	360,000원×10월 =	3,600 천원
• (중부) 무인경비용역	220,000원×10월 =	2,200 천원
• (강서양천) 무인경비용역	270,000원×12월×3교 =	9,720 천원
• (강남서초) 무인경비용역	330,000원×11월×2교 =	7,260 천원
• (성동광진) 무인경비용역	187,000원×12월 =	2,244 천원

- 이와 같은 유희시설 관리비는 관리면적에 따라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같은 유희시설에 대한 면적당 단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희시설별 항목 단가는 지원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표준 관리비용 단가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희시설 관리비 예산 산정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대로 자료를 단순 취합하여 예산을 편성 제출하고 있고, 이는 유희시설 관리비의 불완전한 추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 따라서 금번 본예산 심사시 유희시설 면적별 기준단가를 확정하고 이에 기초해 제출된 유희시설별 관리비를 재산정하여 기준단가에 비해 과도한 단가를 기초로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서울 지역의 폐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증개축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의해 휴교시설 등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유휴시설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별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비 산정에 공통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 노후시설개선(기타사업) - 교육시설안전과(사업별 설명자료 1749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83,876,965	719,621,238	1,085,746,733	△235,744,273	△601,869,768	◦ 안전 시급 사업 위주 축소 편성
기타사업	54,654,094	100,139,441	268,045,651	△45,485,347	△213,391,557	

○ ‘노후시설개선(기타사업)’ 중 운동장환경개선 사업은 노후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선하고,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 중 마사토 운동장인 학교에 인조잔디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인조잔디 사업은 노후시설관리 사업 중 기타사업(운동장환경개선)에 공립학교 80억원, 사립학교 20억원 등 100억원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 유지관리 부실,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부담 등으로 2013년부터 인조잔디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설치를 추진하는 자체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인조잔디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외부 재원이 투입될 경우 인조잔디 신설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¹¹⁵⁾.

[표-105] 서울시교육청 학교 인조잔디 지원 추진 경과

일시	추진 내용
20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 중단 -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 유지관리 부실, 교체비용 부담 등으로 신규사업 중단
20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 -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사업 우선 지원

115) 2019년 이후 외부재원 지원으로 인조잔디가 신설된 학교는 총 22개교임.

일시	추진 내용
20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조잔디 운동장 일부 교체예산 지원 - 운동부 보유한 인조잔디 운동장 학교, 외부 재원 시설일 경우 허용 - 그 외 학교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전환 권장, 인조잔디 신규설치 사양
20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의 유해물질(PHAs) 분석 KS 고시 개정 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신설) 사업 추진 -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신설)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환경부의 유해물질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사업 추진할 계획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인조잔디 운동장 신설을 중단한 2013년 이후 인조잔디를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한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의 경우 인조잔디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사토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인조잔디 신설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등¹¹⁶⁾ 인조잔디 교체 및 신설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종전 방침을 개선해 2023년부터 학교 인조잔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4년부터 학교 인조잔디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표-106] 2024년도 인조잔디(운동장환경개선) 예산편성 현황

사업명	사업내역	산출기초	예산
노후시설관리 (기타사업)	운동장환경개선(공립학교)	8,000,000천원 × 1식 =	8,000,000 천원
	운동장환경개선(사립학교)	2,000,000천원 × 1식 =	2,000,000 천원

○ 그러나 인조잔디 사업은 ‘운동장 면적’에 따라 예산이 학교별로 크게 상이하며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 학교가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등 사업의 예산을 1식

116) (운동부 보유 여부 관계없이) 외부 재원으로 인조잔디를 신설하는 것은 허용

으로 포괄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학교별 우선순위에 근거해 면밀한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하고 심의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07] 학교 운동장 면적별 인조잔디 예산 현황 (2022년도)

자치구	학교명	설립	설치연도 (최초)	면적 (㎡)	예산액 (천원)
강남서초	연주초	공립	2012	2,798	335,760
성동광진	자양중	공립	2011	4,311	517,320
성동광진	광장초	공립	2009	2,610	313,200
시설본부	재현중	사립	2009	7,665	919,800
시설본부	한양공업고	사립	2009	4,390	526,800
강남서초	구룡초	공립	2011	3,640	436,800
용산구	용산고	공립	2013	4,150	869,270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신설의 경우, 종전처럼 ‘지자체 등의 대응 투자’가 있어야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고수한 채, 금번 예산안에도 신규 설치사업은 제외하고 기존 인조잔디 설치 학교의 교체 예산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학교 인조잔디는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운동부 보유 학교(143개교) 중 인조잔디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49%(70개교)에 이르고 있는바, 금번 우선순위 조사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규 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운동부 보유학교의 인조잔디 신설에 대해서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를 필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교육환경개선사업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교육시설안전과(사업별 설명자료 1729쪽)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0,480	92,620	112,020	△52,140	△71,540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	33,200	76,800	96,200	△43,600	△63,000	
외부전문가참여 시설공사현장점검	7,280	15,820	좌동	△8,540	좌동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사업은 ‘2024~2026년 교육 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이 사업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4천 3백만원이 감액된 3천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교육환경개선사업’ 은 노후화된 주요 교육시설 분야(11개 단위사업)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학교별 통합 시설개선 순위를 선정하고, 3년간(2024년~2026년)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동 사업은 2023년도 실태조사 및 우선 순위심의 등을 통해 사업 대상 학교 총 896개교(2024년~2026년)가 선정되었습니다.

[표-108] 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 단위사업

① 냉난방 - EHP - GHP	② 창호 - 외부창호 - 중연창 - 교실출입문	③ 바닥 - 목조후로링 - 비닐계열	④ 방수 - 옥상방수	⑤ 전기시설 - 수배전시설 - 옥외인입간선 - 방송장비	⑥ 급식시설 - 급식실 - 학생식당
⑦ 화장실 - 전면 개선	⑧ 외벽 - 치장벽돌 - 판넬, 석재 - 타일 - 미장몰탈	⑨ 소방시설 - 기계실 - 옥내소화전 - 전기소방	⑩ 외부환경 - 배수로 - 담장 - 포장	⑪ 도장 - 외부도장 - 내부도장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은 ‘우선순위 심의’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로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8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검증단은 팀별(5명)로 사업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배점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3년도에 3년간(2024년~2026년)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에 별도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202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¹¹⁷⁾,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현장검증단의 2023년 현장 검증시 2024년부터 2026년 물량이 아닌 2024년 물량만을 검증하여 우선순위를 확정·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¹¹⁸⁾

- 이와 같이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시민참여 검증단’이 2025년 사업대상학교의 실태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현재 확정된 우선순위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동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현장검증단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교육청에서는 2025년, 2026년 사업대상 학교의 ‘시민참여 검증단’ 점검 없이 우선순위가 최종 확정된 과정과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7) 2024년도에는 2026년 사업대상 학교의 시민참여검증단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118) 2026년 사업대상 학교도 시민참여 검증단의 점검 없이 우선순위 확정

[표-109]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

업 무 구 분	추진시기	추진기관	세 부 내 용
대상사업 신청	23. 3. 27.(월) ~ 23. 4. 7.(금)	학교 (공·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대상: 11개 분야 대상사업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사업 신청
현장조사 실시	4~6월 중	교육지원청 ·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학교 현장 방문조사 실시
실태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월 중	교육지원청 ·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별 순위 선정 - 단위사업별 노후도,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등으로 단위사업 선정 • 학교단위 우선순위 선정 - 단위사업 순위를 근거로 학교단위 우선순위 선정
시민참여검증단 구성·운영	7~8월 중	본청. 교육지원청 ·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학부모·전문가) 검증 참여
우선순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9월 중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위 우선순위 최종 확정 - 시민참여검증 결과 및 지원청·본부 의견 반영
우선순위 공개 및 예산 편성	9~10월 중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빌시스템 공개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예산 반영(학교단위 순위별 편성)

6) 직속기관

가)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교육연구정보원(사업별 설명자료 1890쪽)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52,259	768,405	좌동	△316,146	좌동	
교사독서교육연구회외	40,000	90,000	좌동	△50,000	좌동	◦ 팀 수 조정
수업탐구교사공동체외	400,000	660,000	좌동	△260,000	좌동	◦ 팀별 지원 금액 및 팀 수 조정
학교간교원학습 공동체연수	8,370	10,700	좌동	△2,330	좌동	
학교간교원학습 공동체운영	3,889	7,705	좌동	△3,816	좌동	◦ 팀별 지원 금액 및 팀 수 조정

- 세세부사업인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 은 관내 다수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의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자발적인 교원 능력 신장과 수업 전문성 제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2023년 대비 3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4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65개 영역 467개 공동체, 3,720명의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¹¹⁹⁾ 공동체별 연구비 지원과 가이드북 및 우수사례집 제작, 공동체 임원을 포함한 사업담당자 연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24년 예산안에서 본 사업은 1개 팀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대상 연수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연구 지원 정책 현황을 고

119)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2-2번(2023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려할 때 정책 간 차별성이 낮고, 효과성도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예산안에서 ‘교원 연구비’ 지원 336억 6천 7백만원,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운영 2억 9천 3백만원, ‘교원역량 성장지원(생각을 쓰는 교실)’에 7억 5천 4백만원,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에 6억 9천 7백만원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의 초중등 독서교육교사단, 서울 교육연구년제, 학습연구년제 운영, 교과·주제별 교원 연수(중등영어교사단기연수, AI 교육 선도교사단 등)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는 동 사업을 통해 구성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가 개별 정책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특정 교원학습공동체에 과도한 행·재정적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024년 예산안에서는 교과나 주제별로 구성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가 국제바칼로레아(IB)와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드론 교육 등의 개별 사업 단위에서 별도로 연수 지원 등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가 타 정책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통일교육을 주제로 하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통일역량강화지원’의 주요 사업대상이 되어 실천사례집 제작 등에도 참여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는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에 따라 온라인 연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110] 교원통일역량강화지원(세세세부사업) 중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관련¹²⁰⁾

Ⅲ. 사업내용
1. 교원통일역량강화지원

120) 사업별 설명자료 1292쪽.

다. 통일교육실천사례집 제작

- 기간 : 2024. 7. ~ 12.
- 대상 : 통일 업무 담당 교사, 초·중·고 교원
- 내용 : 우수 통일안보수업 실천 사례집 제작 및 배포
 - 학교통일프로젝트 수업교, 통일교육실천동아리 운영교,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의 우수 통일안보교육 실천사례 공유 및 확산
- 소요예산 : 8,910천원

[표-111]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세세세부사업) 중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관련¹²¹⁾

Ⅲ. 사업내용

2.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가.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실천 지원

- 기간 : 2024. 3. ~ 12.
- 대상 : 초·중·고 학생 및 교원
- 내용
 -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 컨설팅단 역량 강화 연수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선도단 역량 강화 연수
 - 교육전문직원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 실천 지원 역량 강화 연수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수업시간에 민주시민교육하기) 운영 온라인 연수**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연계 사회현안 실천 사례 나눔 운영
 - 지원청별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 실천 교원 연수, 컨설팅, 사례 나눔 운영
 -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운영교 지원
 - 전년 대비 증감 사유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편성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전환

○ 따라서 이들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로서 재정지원을 받는 동시에 개별 사업부서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타 정책사업과 차별성이 낮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더욱이 특수교육과의 사업인 “특수교육과정지원”에 따라 운영될 예정인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와 ‘수업나눔교사단 운영’ 등이 특

121) 사업별 설명자료 1278쪽.

수교육 또는 통합교육을 테마로 운영되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도 불명료합니다.

표-112]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수업나눔교사단,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간 비교¹²²⁾

구분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수업나눔교사단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
개념	수업나눔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학교 간 연계 체계로, 공동의 전문성 향상 과정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소통·나눔·배움으로 수업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협의체	교육과정 디자인 및 수업코칭 전문가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서울특수교육의 수업나눔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업 친구이자 멘토 * 단장(특수학교 교장)과 부단장(교감) 외에 10명의 교사로 구성	연구하는 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발적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교원 공동의 연구·실천을 도모하는 공동체
2023년 운영현황	6개 분과, 총 32교 참여 (유아학교, 시·청각장애, 권역별 발달(지체) 장애)	13명	4개 영역, 15팀, 96명 운영

- 따라서 동 사업은 타 정책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단 구성이나 학습공동체 지원 등과의 차별성도 불분명하고, 교원 연구비 지원과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본 사업 중 세세세부사업인 ‘학교간교원학습공동체운영’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예산으로, 팀별 지원액과 근무일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80만원 감액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가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후 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영수증 및 증빙자료의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로,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자료 일체를 수기로 제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2)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2023.2.), 2023 자율·협력 중심 교원 성장 지원 계획(안)을 참고했고, 수업나눔교사단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은 2024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함.

- 그러나 영수증 및 증빙자료의 제출은 업무 자동화 및 제출 방법 변경 등을 통해 별도 인건비 지출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검토나 제도의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의 존폐와 별개로 동 사업예산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생략)

VI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VI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별첨] 참고)

IX. 부대의견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별첨]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 총규모

구 분	예산안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11,160,536,248	11,160,536,248	0
세 출	11,160,536,248	11,160,536,248	0

□ 세출감액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935,226	2,886,226	△49,000	○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
교원인사관리	11,564,614	11,562,514	△2,100	○ 각종위원회운영
교육과정운영지원	52,375,112	51,983,082	△392,030	○ 생태체험교육농촌유학지원금 외 1건
현장중심장학지원	2,486,990	2,376,990	△110,000	○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
유아교육운영	4,288,992	4,136,992	△152,000	○ 테마형유치원운영
사립유치원지원	58,313,216	57,707,246	△605,970	○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독서논술교육운영	3,833,095	3,333,095	△500,000	○ 서울형심층쟁점독서토론프로그램운영
취업역량강화	8,885,196	8,631,771	△253,425	○ 블럭체인DID기반취업지원
직업교육환경개선	11,418,168	11,408,118	△10,050	○ 직업계고재구조화컨설팅
ICT활용교육지원	379,495,761	223,323,165	△156,172,596	○ 원격교육지원(디벗 구입 외 3개사업)
학생생활지도지원	1,717,120	1,498,200	△218,920	○ 민주시민교육강화 외 2건
성폭력예방교육등	607,231	402,781	△204,450	○ 불법촬영점검위탁용역
학생안전관리	4,417,958	4,283,114	△134,844	○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운영
진로진학교육운영	6,549,726	6,486,750	△62,976	○ 지역연계진로체험프로그램지원 외 1건
교육비지원	66,862,615	66,812,615	△50,000	○ 입학준비금홍보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교육복지우선지원	28,075,555	27,916,455	△159,100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학교보건관리	9,597,260	9,573,900	△23,360	○ 성교육및성폭력예방고위직교육 외 1건
학교신증설	49,611,483	44,322,181	△5,289,302	○ 학교신설((가칭)동진학교) 외 1건
학교시설환경개선	589,957,384	589,887,384	△70,000	○ 꿈을담은교실백서발간
교육정책홍보	4,372,194	4,352,194	△20,000	○ 교육정책여론조사
예산관리	5,289,589	1,389,589	△3,900,000	○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재무회계관리	13,221,579	10,735,579	△2,486,000	○ 학교안전공제회지원
시설사업운영	40,023,250	39,990,050	△33,200	○ 교육환경개선사업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
교직원단체관리	541,529	471,529	△70,000	○ 교직원단체지방보조금지원
합 계	1,356,440,843	1,185,471,520	△170,969,323	

□ 세출증액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직업교육환경개선	11,418,168	11,518,168	100,000	○ 일신여상고 직업교육환경개선
학교정보화여건개선	22,409,987	23,209,987	800,000	○ 신나는AI교실기자재지원
ICT활용교육지원	379,495,761	384,328,761	4,833,000	○ 공진초 전자철판설치 외 27건
각종체육활동	25,767,476	26,297,476	530,000	○ 성보중 디지털기반스마트건강관리교실 외 2건
학생안전관리	4,417,958	5,182,958	765,000	○ 정원여중 학교CCTV설치지원 외 8건
학교보건관리	9,597,260	9,647,260	50,000	○ 학생마음건강전문가학교방문지원
학교시설환경개선	589,957,384	620,379,384	30,422,000	○ 운동장환경개선 외 181건
재무회계관리	13,221,579	13,524,597	303,018	○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공제료
예비비	20,000,000	153,166,305	133,166,305	○ 일반예비비
합 계	1,076,285,573	1,247,254,896	170,969,323	